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국과 베트남의 관세 관련 규정과 통관절차의
비교 연구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貿易學科

張賢珍

2017年 6月

碩士學位論文

한국과 베트남의 관세 관련 규정과 통관절차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s on Customs and Customs
Procedures between Korea and Vietnam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貿易學科

張賢珍

2017年 6月

한국과 베트남의 관세 관련 규정과 통관절차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s on Customs and Customs
Procedures between Korea and Vietnam

指導教授 羅 公 寓

張 賢 珍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6月

張賢珍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17年 6月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s on Customs and Customs
Procedures between Korea and Vietnam

Hyun-Jin Jang
(Supervised by professor Kong-Woo La)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June. 201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
June. 2017.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2
제 2 장 연구의 방법과 선행 연구의 검토 및 한·베 교역관계	4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4
1. 베트남 진출 관련 연구	4
2. 통관 환경 관련 연구	6
제2절 한국 대 베트남의 교역관계	8
1. 한국의 대 세계 무역현황	8
2. 한국 대 베트남 무역 규모	10
3. 베트남 전체 무역동향	12
4.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동향 및 무역협정 체결현황	15
제 3 장 한국과 베트남의 관세 주요규정 비교	17
제1절 관세법 개관과 관세 행정기구	17
1. 관세법 개관	17
2. 관세 행정기구	18
제2절 관세의 과세요건·징수·환급 및 감면	23
1. 과세요건 및 결정	23
2. 납세의무자와 납세	28
3. 관세법규상 관세감면 및 환급	31
제3절 탄력 관세와 기업우대제도 및 형벌	36

1. 탄력 관세 제도	36
2. 심사 및 기업우대 제도	43
3. 관세형별	50
제 4 장 베트남의 관세규정과 통관절차상 문제점	59
제1절 베트남의 통관절차	59
1. 수출입통관 개관	59
2. 수출통관절차	65
3. 수입통관절차	67
제2절 관세규정과 통관절차상의 문제점	70
1. 관세규정상의 문제점	70
2. 통관절차상의 문제점	76
제 5 장 결 론 및 시사점	85
참고문헌	89
Abstract	92

표 차 례

<표Ⅱ-1> 관련 선행연구	7
<표Ⅱ-2> 한국 연도별 수출입 현황	9
<표Ⅱ-3> 한국의 대 세계10대 무역국 현황	9
<표Ⅱ-4>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동향	10
<표Ⅱ-5> 한국의 대 베트남 10대 수출품목 현황	10
<표Ⅱ-6> 한국의 대 베트남 10대 수입품목 현황	11
<표Ⅱ-7> 한국의 대 베트남 성질별 수출액 비중	12
<표Ⅱ-8> 베트남 대외 교역 동향	13
<표Ⅱ-9> 베트남 주요 국가 별 수입현황	13
<표Ⅱ-10> 베트남 주요 수출국 현황	14
<표Ⅱ-11> 한국의 연도별 대 베트남 직접투자 추이	15
<표Ⅱ-12> 한국의 유형별 대 베트남 직접투자 현황	16
<표Ⅱ-13> 양국 간 무역협정체결 현황	16
<표Ⅲ-1> 한-베트남 FTA 주요 품목 양허 현황	43
<표Ⅳ-1> 베트남 세관 수입물품검사 종류	69
<표Ⅳ-2> 2015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분야 소요기간 및 비용비교	76
<표Ⅳ-3> 한국과 베트남 수출입 소요시간	77
<표Ⅳ-4> 한국의 물류성과 지수	79
<표Ⅳ-5> 베트남의 물류성과 지수	80

그림 차례

<그림Ⅲ-1> 한국 관세 행정 조직 개요(2016)	19
<그림Ⅲ-2> 한국 관세청 조직도(2016년 12월 기준)	20
<그림Ⅲ-3> 베트남 관세행정 조직도	21
<그림Ⅲ-4 >기업심사(관세심사) 절차	44
<그림Ⅲ-5> 기업심사(관세심사) 종류	44
<그림Ⅳ-1> 베트남 수출통관 흐름도	67
<그림Ⅳ-2> 베트남 수입통관 흐름도	68
<그림Ⅳ-3> 물류성과지수 질문	7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 이후 중국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자원으로 세계 다국적 제조업들의 생산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양적 경제성장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중국 국영기업의 낮은 생산성, 급격한 인건비 상승,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기준 강화,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 생산비용 상승 문제 요인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 도입형의 차이나 리스크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안투자국으로 동남아시아를 꼽는데, 그 중 베트남이 유력한 투자처로 부상하게 되었다.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정책¹⁾은 베트남의 정치개혁을 불러왔으며, 경제 체제 및 발전 전략 등 모든 면의 변화를 가져왔다. 1987년 처음으로 공포된 투자법규는 여러 차례 걸쳐 개정 및 보강을 해오며, 2006년 투자법으로 외국인과 베트남 투자자들간 차별 철폐 및 투자절차 단순화가 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후 정상방문을 통해 꾸준히 우호관계를 강화했으며, 2009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양국관계를 격상하는 등 정치·외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최근 들어 베트남은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 등으로 각국의 글로벌기업의 유망 투자국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며, 베트남에게 한국은 투자 1위국으로서 우리 기업들에게 경제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1)도이모이(Doi Moi) 정책은 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며, 베트남판 페레스트로이카인 도이모이 정책은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도입 과정에서의 시행 착오와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975년에 통일을 이룬 공산 베트남은 그 후 10년간 전쟁 피해 복구와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커지고, 구소련의 몰락으로 원조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경제 위기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1986년에 시장 경제 활성화와 대외 개방을 근간으로 하는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도이모이 정책의 실시로 소유·농업·가격·재정·금융·무역 및 외환 제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혁을 단행했다. 즉, 공적 소유제가 사회주의에서 유일한 소유 형태라는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사유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유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했다. 또한, 개방을 통해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해외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자원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제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대교학습 백과 참조).

되었다.

한편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한-베 FTA를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면서 베트남 FTA는 한국의 15번째 FTA로서, 한국의 아세안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과의 FTA로써 기존 한·아세안 FTA상 낮은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여, 양국간의 교류는 더욱더 활발해지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 및 한·베트남 FTA 타결을 통해 한국 수출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베트남 내수 소비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은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법체계에 문제가 많고,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관세법상의 개관과 관세행정기구와 주요 관세법령상의 내용, 그리고 통관절차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한국법과 통관절차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 무역기업에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논문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세규정 및 통관절차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베트남은 한국의 투자국으로서 많이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베트남은 중국(홍콩 포함)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위 수출대상국이자, 한국의 제1위 아세안 교역 대상국이다. 한국은 베트남에서 수입도 많이 하지만 베트남으로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및 수출기업에게 베트남의 관세규정 및 통관절차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관세규정과 통관절차를 분석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관련 업계의 애로 분석을 통해 연구하

2) KOTRA 해외시장뉴스, 호찌민 세관 인터뷰, Saigon Times,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고자 한다. 문헌연구 중 한국의 관련규정과 통관에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관세사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에 대한 발표된 자료와 국내외 논문 및 정기간행물, 인터넷자료 및 한국의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이용하였다. 베트남의 관련 자료는 베트남의 신 관세청법, 베트남 수출·수입세법,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세관리 안내에 관한 각종 시행 규칙 등을 참조하고 현지 무역 관련기관의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규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 베트남의 통관절차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응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 및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현황과 투자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그 현황 추이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세법의 일반적 개관과 관세 행정기구, 관세관련 주요 내용 및 통관절차 등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의 관련규정과 통관절차를 비교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관련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OECD, World Bank 등의 무역 원활화 지수 및 Doing Business의 무역소요 시간 및 비용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한편 현지 및 관련 협회의 무역 애로 내용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2 장 연구의 방법과 선행 연구 검토 및 한·베 교역관계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1. 베트남 진출 관련 연구

먼저 베트남의 관세규정과 통관절차와 관련된 연구 논문은 거의 없으며, 그나마 연구논문은 경쟁력 분석과 투자 및 통상 관련 논문뿐이다. 그리고 관련 보고서는 주로 대한 무역진흥공사의 베트남 지역 무역관의 보고서, 나라별 통상환경이나 조세재정연구원의 베트남 통상환경 분석 등이다³⁾.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세규정 내용을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이제홍(a)⁴⁾의 연구에서는 한국제품이 베트남에 수출 증대를 위한 제반 문제점과 수출 경쟁력 요인을 개발하여 수출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으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요인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의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변수를 찾는 데 중심점을 두고 베트남 시장 경쟁력 결정요인을 개발하여 한국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강도에 따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베트남 시장변화에 따라 수출경쟁력의 증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시장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함으로써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수출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영문⁵⁾의 연구에서는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의 통상정책과 통상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한 통상파트너로 보고, 한국이 베트남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베트남의 통상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통상정책을 다양한 관

3) <http://www.dbpia.co.kr/SearchResult> 검색결과 관련 연구논문 2건이며, 베트남의 관세규정 관련 연구는 0건임.

4) 이제홍,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에서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무역학회지, 37(4), 139-160., 2012.

5) 강영문,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한·베트남 통상협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2권 제2호, 2017. 4, 97-116.

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베트남을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베트남의 통상정책의 배경과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실용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베트남 통상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베트남 통상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려면 중국과는 상이한 베트남의 통상정책에 적합한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목표와 개방속도, 산업정책에 적합한 대 베트남 투자와 공적 개발 원조를 해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임규채⁶⁾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시장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FTA체결에 따른 생산효과와 중국과의 경합도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과 중국은 베트남의 주요 교역대상국이며 주력 수출품목이 유사하여 경쟁력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베트남과의 FTA는 무역창출효과와 간접무역굴절효과는 나타났으나 무역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제품은 모두 경쟁력이 있으나 한국은 약화되고 있고 중국은 강화되고 있어 최근 베트남시장에서 양국간의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베트남시장 진출 전략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제홍(b)⁷⁾의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한국과 베트남과의 교역, 투자의 증가로 새로운 국가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 베트남의 FTA 체결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보았으나, 한국과 베트남과의 경제교류가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데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치적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 외교적 리스크, 법 제도적 리스크, 문화적 리스크, 국제기업 간 경쟁리스크를 구분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이상의 모든 요인들이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는데 리스크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수출시에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 리스크가 중요한 요인이며, 물품의 수출에

6) 임규채, “한국과 중국의 대 베트남 경쟁력 비교”, 한국무역학회 2016 전국 무역학자 대회 및 경북무역포럼, 2016.6, 297-318.

7) 이제홍,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리스크 결정요인이 경쟁력에 미치는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2.8, 213-232.

대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의 무역정책적 측면의 리스크, 그리고 세이프가드, 덤핑 등의 베트남의 불공정무역에 관한 무역보호정책 등의 요인들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시하였다.

노승혁⁸⁾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베트남의 경제발전단계와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투지진출분야에 있어 상호보완성이 많아 베트남 시장은 향후 유력한 투자대상지역이라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투자환경의 분석과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로부터 투자 실태를 설문문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효율적 투자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로 한국의 대 베트남 경제협력은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향상하는 기술원조에도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정책입안, 행정능력 강화, 민간부문의 경영능력 강화 등을 위한 인력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무상원조와 기술용역제공을 EDCF 협력사업 발굴에 적극 활용하여 진출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 베트남 경제협력은 적절한 ODA와 직접투자를 결합한 한국형 경제협력 모델을 정립 발전시켜 ODA를 중장기적으로 산업기술 이전과 투자과정에서 양국간 분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기적 투자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 통관 환경 관련 연구

먼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⁹⁾의 보고서에서 베트남의 통관환경에 대한 개관과 수출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통관절차 등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고 통관절차별 수입신고 전, 수입신고 및 세관 심사, 통관절차상, 관세납부 및 물품 반출단계 등 각 단계별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노이 무역관¹⁰⁾의 보고서에서는 베트남의 투자 진출 전략을 개관해 보고 우선 진출환경 분석을 통해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경제 환경, 산업환경, 규제 환경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장 분석과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

8) 노승혁, “한·베트남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효율적 투자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6호, 2004.12, 71-92.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 12.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노이 무역관, 「2017 베트남 진출전략」, 2016. 11.

을 개관하고 분야별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¹¹⁾베트남 진출에 따른 세무와 수출입절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규로 베트남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경우 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숙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출입 통관절차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각각의 단계별로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단계에서는 Q&A를 통해 설명을 보충해 주고 있다.

<표Ⅱ-1> 관련 선행 연구

구 분	내 용	
주 요 선행 연구	이제홍(a)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 확대 및 정책적 시사점 제공. - 연구 내용 : 베트남 무역정책, 베트남 시장환경, 베트남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 향상, 한국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적합한 저가의 고품질 제품을 수출하는 세부적 전략 수립 강조.
	강영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베트남의 통상정책의 배경과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실용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베트남 통상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한·베트남 통상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려면 중국과는 상이한 베트남의 통상정책에 적합한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목표와 개방속도, 산업정책에 적합한 대 베트남 투자와 공적 개발 원조를 해야 한다고 제시
	임규채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FTA체결에 따른 생산효과와 중국과의 경쟁도를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베트남시장 진출 전략을 새롭게 구축 필요성 강조. - 연구 내용 : 향후 유통, 물류 등 서비스업 진출, 베트남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대체산업 성장에 대비한 시장 확대 전략 마련이 시급
	이제홍(b)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한국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데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치적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 외교적 리스크, 법 제도적 리스크, 문화적 리스크, 국제기업간 경쟁리스크를 구분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 - 연구 내용: 수출시에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 리스크가 중요한 요인이며, 물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의 무역정책적 측면의 리스크, 그리고 셰이프가드, 덤핑 등의 베트남의 불공정무역에 관한 무역보호정책 등의 요인들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시
	노승혁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베트남 투자환경의 분석과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로부터 투자 실태를 설문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효율적 투자진출방안을 제시 - 연구 내용: 한국의 대 베트남 경제협력은 적절한 ODA와 직접투자를 결합한 한국형 경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구 분	내 용
	제협력 모델을 정립 발전시켜 ODA를 중장기적으로 산업기술 이전과 투자과정에서 양국간 분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기적 투자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베트남의 통관환경에 대한 개관과 수출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통관절차 등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고 통관절차별 수입신고 전, 수입신고 및 세관 심사, 통관절차상, 관세납부 및 물품 반출단계 등 각 단계별로 고려사항을 제시
하노이 무역관(2016)	- 진출환경 분석을 통해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경제 환경, 산업환경, 규제 환경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장 분석과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분야별 진출전략을 제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 베트남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경우 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숙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출입 통관절차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각각의 단계별로 제시
본 연구	- 한국과 베트남의 관세규정과 통관절차 내용이 규범적, 실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베트남 관세 및 통관관련 절차를 심도 있게 연구한 논문은 전무하며, 다만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신관세법,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세금 관리에 대한 시행세칙을 한국의 관련 법과 규정을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여 한국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한국 대 베트남의 교역관계

1. 한국의 대 세계 무역현황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은 2015년과 2016년에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무역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6년 한국은 대 세계 10대 무역국은 중국이 수출과 수입국에 있어서 부동의 1위이다. 그 뒤로 수출은 미국, 홍콩,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대만 순이며, 수입에 있어서는 일본, 미국, 독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베트남 순이다. 그리고 수출에서는 상위 10개국의 수출비중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67.5%로 나타났으며, 수입에서는 상위

10개국이 67.7%로 거의 대등하게 나타났다.

<표Ⅱ-2>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

년도	수출액	증감액	수입액	증감액
2016년	495,426	-5.9%	406,193	-6.9%
2015년	526,757	-8.0%	436,499	-16.9%
2014년	572,665	2.3%	525,515	1.9%
2013년	559,632	2.1%	515,586	-0.8%
2012년	547,870	-1.3%	519,584	-0.9%
2011년	555,214	19.0%	524,413	23.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자료검색일 2017. 4. 30)

<표Ⅱ-3> 한국의 대 세계 10대 무역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

구분	수출			수입			
	년도 (순위)	국가	총수출액/ 10개국수출액	비중	국가	총수입액/ 10개국수입액	비중
	2016년		495,426/ 334,388	67.5		406,193/ 275,117	67.7
	1위	중국	124,433	25.1	중국	86,980	21.4
	2위	미국	66,462	13.4	일본	47,467	11.7
	3위	홍콩	32,782	6.6	미국	43,216	10.6
	4위	베트남	32,630	6.6	독일	18,917	4.7
	5위	일본	24,355	4.9	대만	16,403	4.0
	6위	싱가포르	12,459	2.5	사우디아라 비아	15,742	3.9
	7위	대만	12,220	2.5	호주	15,176	3.7
	8위	인도(인디아)	11,596	2.3	베트남	12,495	3.1
	9위	멕시코	9,721	2.0	카타르	10,081	2.5
	10위	마셜제도	7,728	1.6	러시아	8,641	2.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자료검색일 2017. 4. 30)

2. 한국 대 베트남 무역 규모

한국과 베트남의 2012년 총 교역량 중 수출은 약 159억 달러, 수입은 약 57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10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매년 교역량은 증가하여 2013년 130억 달러, 2014년 143억 달러, 2015년 179억 달러, 2016년 20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급증 추세는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의 약 70%가 투자진출 기업의 원부자재 수입 수요 증가 및 설비·부품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베트남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나 투자기업들은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생산제품을 주요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베트남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Ⅱ-4>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15,956(18.4)	21,088(32.2)	22,352(6.0)	27,771(24.2)	32,630(17.5)
수입	5,719(12.5)	7,175(25.5)	7,990(11.4)	9,805(22.7)	12,495(27.4)
무역수지	10,227	13,912	14,361	17,966	20,13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자료검색일 2017. 4. 30)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 상위품목을 보면 무선통신기기부품, 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인쇄회로, 합성수지, 편직물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부자재 및 자본재의 수출비중이 소비재의 비중보다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표Ⅱ-5> 한국의 대 베트남 10대 수출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

순번	구분 품 목 명	2015				2016			
		수출	수출증감	수입	수입증감	수출	수출증감	수입	수입증감
1	무선통신기기부품	4,109	88.0	1,135	352.6	5,009	21.9	2,069	82.2
2	집적회로반도체	2,591	-0.5	54	-49.1	4,071	57.1	55	1.3
3	평판디스플레이	1,130	176.5	14	-41.4	2,477	119.1	51	247.5

4	인쇄회로	917	30.7	156	242.4	1,282	39.7	190	21.6
5	합성수지	1,110	-6.5	9	23.2	1,203	8.4	8	-14.8
6	편직물	977	-0.1	8	2.2	1,077	10.3	10	25.7
7	휘발유	187	-20.4	0	0.0	965	415.1	0	0.0
8	기타 플라스틱제품	511	41.2	44	59.3	552	8.0	64	43.0
9	열연강판	512	-11.1	-	7.1	523	2.1	-	128.8
10	개별소자반도체	265	55.2	51	151.6	491	85.0	61	18.5
	합계	27,770	24.2	9,804	22.7	32,630	17.5	12,495	27.4

주:10대 품목별 현황과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순위는 2016년 기준임.

품목 : MTI 4 단위기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자료검색일 2017. 4. 30)

한편, 베트남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식물제의류, 편직제의류, 신발, TV카메라 및 수상기, 컴퓨터부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수입하는 물품을 보면 단순가공이나 단순조립의 형태의 물품이 주로 수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6> 한국의 대 베트남 10대 수입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

구분 순번	품목명	2015				2016			
		수출	수출증감	수입	수입증감	수출	수출증감	수입	수입증감
1	무선통신기기부품	4,109	88.0	1,135	352.6	5,009	21.9	2,069	82.2
2	식물제의류	345	7.5	1,635	-2.4	352	1.9	1,676	2.5
3	편직제의류	29	-6.2	530	23.6	33	14.5	688	29.6
4	신발	86	-1.8	526	4.0	115	32.8	628	19.2
5	TV카메라 및수상기	97	1,296.5	251	710,643.2	148	53.2	585	132.9
6	컴퓨터부품	19	171.8	294	263.5	41	123.9	385	31.2
7	칼라TV	168	48.5	148	80.4	255	51.6	338	127.8
8	무선전화기	12	-38.0	49	36.3	4	-68.4	332	584.0

9	기타 목재류	1	151.4	233	-6.1	-	-41.5	254	9.0
10	기타 섬유제품	122	3.6	186	12.6	126	3.8	212	13.5
	합계	27,771	24.2	9,805	22.7	32,630	17.5	12,495	27.4

주:10대 품목별 현황과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순위는 2016년 기준임.

품목 : MTI 4 단위기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자료검색일 2017. 4. 30)

<표Ⅱ-7> 한국의 대 베트남 성질별 수출액 비중

(단위: 천 달러, 증감률 %)

품목 성질	구분	수출			수입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자본재	교역액	3,657,343	4,788,343	4,145,312	730,995	881,145	1,297,211
	증감율	6.0	30.9	-13.4	50.5	20.5	47.2
중간재	교역액	17,210,027	21,212,104	26,377,973	2,331,467	3,706,136	5,111,122
	증감율	5.6	23.3	24.4	12.2	59.0	37.9
소비재	교역액	1,366,442	1,684,601	1,987,462	4,098,418	4,523,568	5,493,582
	증감율	16.5	23.3	18.0	30.0	10.4	21.4

품목 : MTI 4 단위기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자료검색일 2017. 4. 30)

한편, 한국과 베트남의 성질별 교역에서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자본재의 경우 41억 5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은 12억 9천만 달러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중간재의 경우에는 수출은 263억7천만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51억1천만 정도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재를 보면 19억8천만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으나, 54억 9천만 달러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재의 경우 베트남으로부터 많은 수입초과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베트남 전체 무역 동향

베트남은 취약한 소재 산업 및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교역 구조로 인해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WTO 가입 직후 한때 175억 달러('08년)까지 확대됐으나, 2009

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12년 흑자로 전환됐다. 2001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2013년에도 수출 1,321억 달러, 수입 1,321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었다가 2014년 약 2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표Ⅱ-8> 베트남 대외 교역 교역동향

(단위: 억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969.1	1,145.3	1,320.3	1,500.4	1,624.4
수입	1,067.5	1,137.8	1,320.3	1,480.6	1,656.1
무역수지	-98.4	7.8	0	19.8	-31.7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http://www.gso.gov.vn> (자료검색일 2017. 4. 30)

2016년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음.

2007년 WTO 가입 이후, 베트남은 연평균 수출 증가율 18.7%, 수입증가율 12.6%를 이루었다.¹²⁾ 최근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전기·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원화되기 시작했고, 외투기업에 의한 수출구조 고도화에 따라 베트남 수출품목이 섬유·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 의존도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베트남-EU 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생산거점 및 수출기지로서의 베트남 투자가 증가했고, 투자 진출한 외투기업들의 수입수요가 늘면서 3년만에 다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표Ⅱ-9> 베트남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번	국가명	2013	2014	2015
1	중 국	36,954	43,868	49,527
2	한 국	20,698	21,736	27,614
3	일 본	11,612	12,909	14,367
4	대 만	9,424	11,085	10,993
5	태 국	6,311	7,119	8,284
6	미 국	5,703	6,284	7,796
7	싱가포르	5,232	6,827	6,038
8	말레이시아	4,104	4,193	4,201
9	독 일	2,963	2,623	3,213
10	인 도	2,883	3,132	2,657

주 : 2015년 순위 기준/2015년 이후 베트남 관세청 자료. 2016년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음.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http://www.gso.gov.vn>(자료검색일 2017. 4. 30)

12)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의 주요 수입 대상국의 경우, 2015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495억 달러로 전년대비 12.9% 증가해 2015년 총수입의 약 32.8%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총 교역규모는 667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의 제 2위 수입 대상국이며, 최근 한국기업들의 활발한 베트남 진출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베트남의 무역 구조는 부품 및 소재를 수입·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부품소재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완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미국, EU 시장에서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왔던 베트남은 지난 2012년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2014년에는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¹³⁾. 하지만 지난 3년간의 무역수지 흑자는 수입 감소함에 따라 ‘경기불황형 흑자’로 평가되며, 2015년은 꾸준한 외투기업 진출 및 산업생산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늘면서 3년 만에 다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표Ⅱ-10> 베트남 주요 수출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번	국가명	2013	2014	2015
1	미 국	23,869	28,656	33,480
2	중 국	13,651	14,906	17,141
3	일 본	13,259	14,704	14,137
4	한 국	6,631	7,144	8,932
5	홍 콩	4,107	5,203	6,965
6	독 일	4,730	5,185	5,705
7	UAE	4,139	4,628	5,695
8	네덜란드	2,937	3,769	4,762
9	말레이시아	4,926	3,931	3,584
10	호 주	3,514	3,990	2,906

주 : 2015년 순위 기준/2015년 이후 베트남 관세청 자료, 2016년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음.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관세청(자료검색일 2017. 4. 30)

베트남의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우, 2015년 미국으로 수출이 약 334억 달러로 전

13) 베트남 통계청, KOTRA 호치민 무역관

체 1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그 뒤로 중국 171억 달러, 일본 141억 달러, 한국 89억 달러, 홍콩 69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4.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동향 및 무역협정 체결현황

1)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동향

한국은 2014년 베트남 1위 투자국 자리를 탈환한 이래, 2위 투자국인 일본과의 격차를 벌리며 최대 투자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전체 누계('1988~'2016.6) 기준으로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FDI)는 총 5,364건, 485억1,000만 달러이며, 이는 베트남이 유치한 직접투자 총액의 16.5%에 해당된다.

전체 누계 1988년 2016년 6월 기준으로 보면 국가별 對베트남 직접투자 현황 한국은 5,364건으로 485.1억 달러 1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3,117건수이며, 398.0억달러 비중은 13.6%이다. 싱가포르는 1,643건수로 379.0억 달러이며, 비중은 12.9%이다. 대만은 2,525건수로 318.6억 달러이며, 비중은 10.9%를 차지하고 있다¹⁴⁾.

<표Ⅱ-11> 한국의 연도별 대 베트남 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USD백만, 신고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6월)	누계(88-16)
투자건수	345	332	488	684	962	546	5,364
투자금액	1,66.6	1,178.0	4,293.5	7,327.5	6,726.9	3,991.4	48,510.0

자료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KOTRA하노이 무역관 재인용.

한국 입장에서도 베트남은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제4위 투자대상국이자 아세안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투자 유형별로는 100% 외국인투자 방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작과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형태의 투자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노이 무역관, 「2017 베트남 진출전략」, 2016. 11. P.12. 참조.

<표Ⅱ-12> 한국의 유형별 대 베트남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USD백만, 신고기준)

순번	투자유형	누계(88.1.1-16.6.)		2016(1월-6월)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	100% 외국인투자	4,795	43,093.6	504	3,927.5
2	합작	534	4,753.1	40	62.8
3	BOT,BT,BTO계약	1	340.0	-	-
4	BCC(경영협력계약)	34	323.3	2	1.1
총계		5,364	48,510	546	3,991.4

자료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KOTRA하노이 무역관 재인용.

2) 무역협정 체결 동향

현재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으로는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 <표Ⅱ-13>과 같다.

<표Ⅱ-13> 양국간 무역협정 체결 현황

구분	한-ASEAN FTA	한-베트남 FTA
추진과정	○ '04년 11월 30일 협상개시 ○ 총 17차례의 협상 진행	○ '12년 8월 6일 협상개시 ○ 총 9차례의 협상 진행
발효일	○ '07년 6월 1일 상품협정 발효 ○ '09년 5월 1일 서비스협정 발효 ○ '09년 9월 1일 투자협정 발효	○ '15년 12월 20일
의의	○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함	○한국이 타결한 열다섯 번째 FTA이자, 한-ASEAN FTA 첫 개별국 업그레이드 협상 ○ 기존 한-ASEAN FTA상의 양국 간 불균형한 상품 양허 수준을 개선
기대효과	○ 한국의 對베트남 수입관세인하에 따라 선진국 및 한국 시장을 겨냥한 수출기지로서의 베트남 투자진출이 확대됨	○ 민감 품목군 추가 개방을 통한 수출 확대 기대 ○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거대 내수소비 시장으로의 진출 여건 마련 ○ 건설 및 도시계획·조경, 기계·장비

		임대 등의 서비스 분야 추가 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 분야 확대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	---

제 3 장 한국과 베트남의 관세 주요규정 비교

제 1 절 관세법 개관과 관세 행정기구

1. 관세법 개관

1) 한국 규정

관세법은 관세행정에 있어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관세법시행령(총13장 288개조)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관세법시행규칙(총87개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관세청 고시, 공고 등을 통해 관리 한다.

현행 관세법의 구성은 13개장 32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으로 이루어져있다. 일반적으로 관세법은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 물품의 통관절차와 관세 등의 과세절차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법은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 물품의 통관절차와 관세 등의 과세절차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통관절차는 수입통관, 수출통관 및 반송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절차는 과세의 4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세요건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관세율, 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⁵⁾.

2) 베트남 규정

현행 신관세법의 구성은 8장 10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세관의 임무 및 조직 제3장 통관절차, 검사제도, 세관감시, 제4장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국세 및 기타 각종 수익금 납부 등, 제5장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 제6장 관세정보와 수출입 물품 통계, 제6장 관세에 대한 국가관리, 제7장 상훈 및 위반처리, 제8장 시행 조항 이루어져있다¹⁶⁾. 그리고 수출·수입세법¹⁷⁾이 있는데,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표준 및 세율, 제3장 세액신고 및 납세, 제4장 면세, 감세, 환급 및 세액 추징, 제5장 민원제기 및 위반처리, 제6장 실행조직, 제7장 시행조항 등 총 28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세금 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데 이 시행규칙은 총 166개 조항을 두고 있다¹⁸⁾.

2. 관세 행정기구

1) 한국 규정

현재 한국은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와 관세청에서 관세정책 및 집행기능을 총괄하고 있다.

관세행정은 실제 기획 집행을 하는 일반 행정기관과 특정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행정위원회가 있다. 일반 행정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세관이 있으며 행정위원회로서는 관세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관세표상위원회가 있다.

한국의 관세행정기구로는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행정기구로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다. 즉, 정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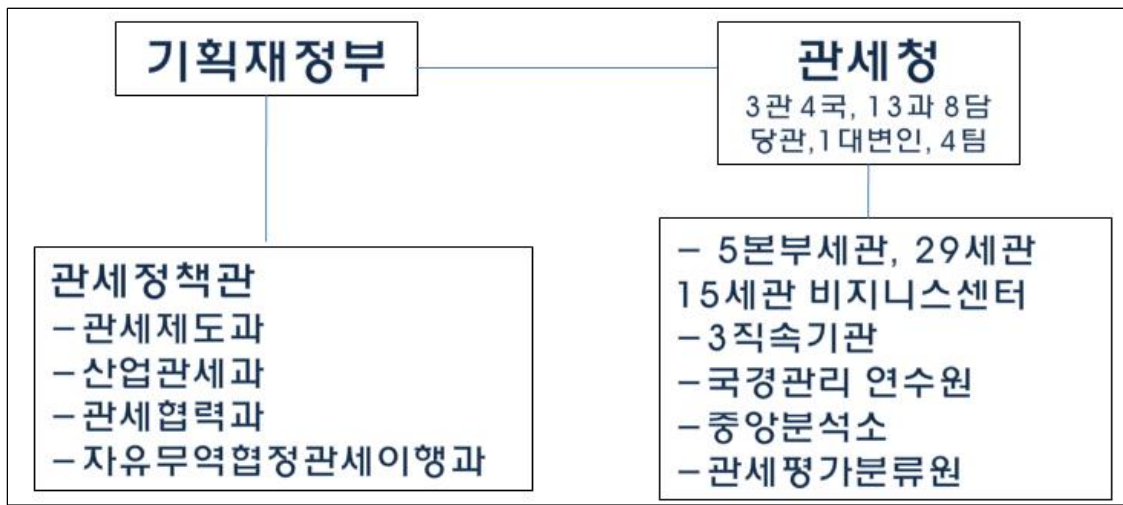
15) 라공우강진욱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1호, 한국관세학회, 2011. 02., p.88.

16)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17)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SỐ 45/2005/QH11, NGÀY 14 THÁNG 6 NĂM 2005)

18) 통관절차 세관감사, 세관감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및 세금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제 194/2010/TT-BTC호, 2010. 12. 6),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Ạ QUAN; KIỂM TRA, GIÁ SÁ HẠ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SỐ 194/2010/TT-BTC, NGÀY 06 THÁNG 12 NĂM 2010)

직법에는 “기획재정부장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고¹⁹⁾, 또한 동법에서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²⁰⁾.”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행정의 중앙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라 보고 지방행정기구로는 세관을 들 수 있다.



<그림Ⅲ-1> 한국 관세행정 조직 개요(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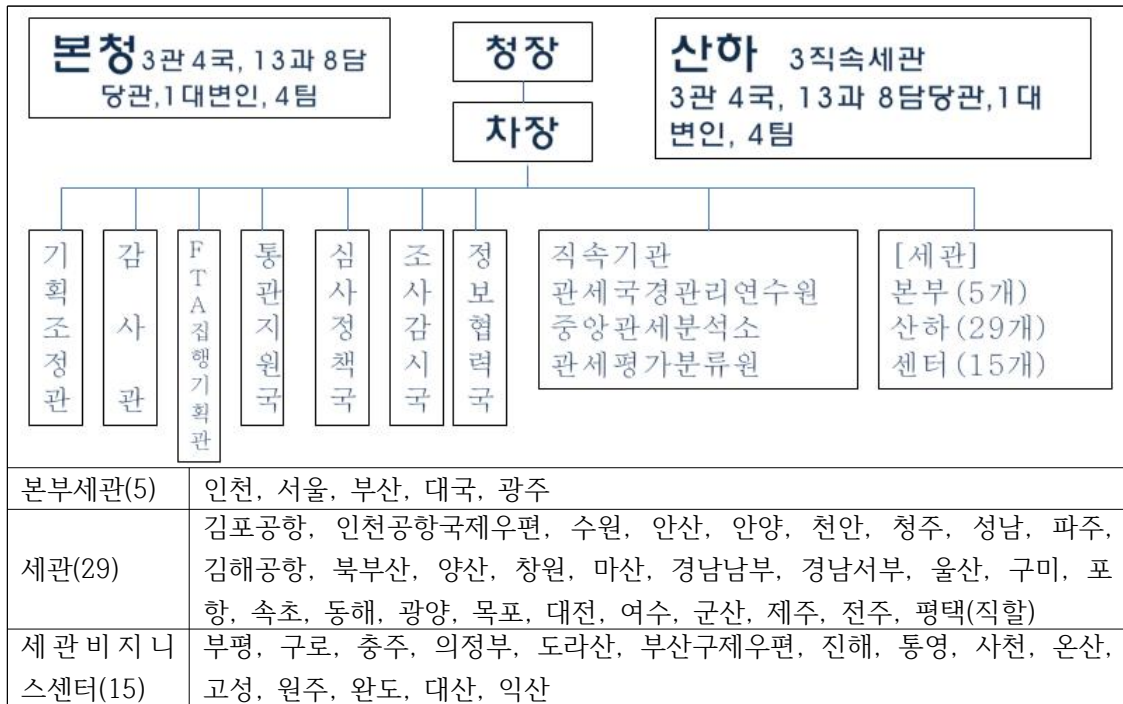
먼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는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²¹⁾,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4개과에서 관세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은 본청(7개국실 26개과와 47개 세관에서 관세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관세행정조직이 관세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은 경제구조가 대외지향적인 것으로 기인한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관세행정 역할은 사회안전 보호기능을 중심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

19) 정부조직법 제27조 제1항. (시행 2016.1.1., 법률 제13593호)

20)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 (시행 2016.1.1., 법률 제13593호)

21) 2015년 10월 15일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가 관세협력과로 통합되었다.



<그림Ⅲ-2> 한국 관세청 조직도(2016년 12월 기준)

2) 베트남 규정

한국의 관세청과 유사한 베트남의 정부기관은 1945년 9월 10일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 관세소비국으로 출발, 현재 재무부 산하 관세 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으로 발전하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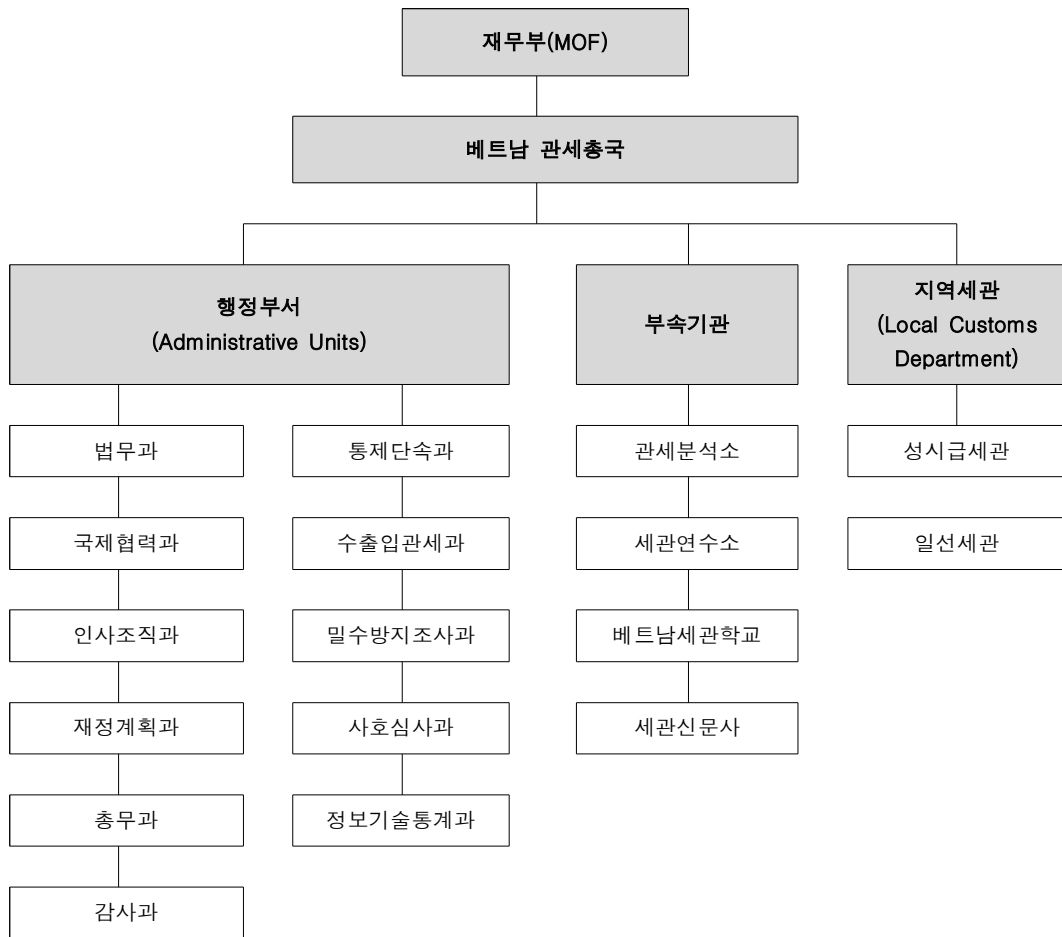
관세총국의 기능과 임무는 통관 절차의 수행, 수출입화물의 검사·감독, 관세법규에 따른 세관 관련 업무의 집행과 수출입 관세 및 정부에서 위임받은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에 대한 조사, 통제 및 단속이다.

베트남 관세 총국의 조직은 본청(해관) 총국, 성급세관(해관국), 지역세관(해관지국), 국경감시소, 세관출장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63개 직할시 및 성 가운데 31개 직할시 및 성에 해관국(지방 관세국)이 있고, 본청의 사후심사국 및 밀수단속국 2개국은 전국 국경세관과 도시에 직할 조직을 두고 있음. 이를 포함하여 통상 33개의 지방 관세조직이 있다.

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홍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2015.12. pp.40-41.

각 지방 해관국은 각 지방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이면서도 중앙의 재무부와 본청의 강한 지휘통제를 받고 있으며, 국경감시소, 세관출장소는 현재 18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세관집행기구는 성급, 지방, 시급세관의 산하기구로서 이들 세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다.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 p.41.

<그림Ⅲ-3> 베트남 관세 행정 조직도

베트남 관세청은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감시;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 운반의 예방;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집행;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물품통계;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에 대한 제안, 지침, 국가관리 조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조세정책을 임무로 한

다²³). 그리고 베트남 관세청의 조직 및 활동의 원칙으로는 베트남 관세청은 집중, 통일의 원칙에 따라 조직 되고 활동하며, 관세총국 총국장은 각급 세관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관리, 조정하며, 하급 세관은 상급세관의 관리, 지도를 받는다²⁴).

그리고 베트남의 관세청 조직체계는 관세청 (관세총국), 관세국(성급, 성 연합, 정부 직속 직할시), 관세지국, 세관단속팀 및 동급 단위부서로 구성한다. 또한 정부는 각 지방의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의 업무량, 규모, 특징, 경제-사회적 특수성, 여건에 근거하여 관세국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각급 세관의 조직, 임무, 활동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²⁵).

세관의 활동지역을 보면 육로, 국제 화물환적 철도역, 국제공항의 세관구역; 수출, 수입, 출국, 입국 활동이 있는 해항, 내륙수로항; 세관감시 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구역, 제조수출구(EPZ), 관세우대구역; 통관수속 장소, 국제우체국, 통관후 세무조사시 세관신고인 주소지; 관세영토내의 수출입 물품검사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관리필요성에 따른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라 물품의 수출, 수입, 국경통과, 운송수단의 출국, 입국, 국경통과 허가를 충족하는 기타 구역, 지점을 포함 한다.

그리고 세관 활동지역에서, 관세기관은 물품, 운송수단에 대하여 세관검사, 세관감시, 세관통제, 그리고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에 부합하게 관세관련 법률위반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²⁶).

한편 베트남 신관세법에서의 관세공무원의 임무와 권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⁷).

- ① 관세 법률, 업무 프로세스를 엄정히 집행하고, 본인의 임무, 권한 수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세관신고인, 조직/법인, 개인에게 안내한다.
- ③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수행한다; 이 법 및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 통관수속 장소 및 검사 장소에서의 개장, 포장, 전재, 하역에 대하여 감시하고, 관세에 관한 법률위반 징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화주, 운송수단주, 관리자, 운송수단 운전자 또는 물품, 운송수단 검사, 분석·조사를 위

23)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12조.

24)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13조.

25)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14조.

26)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7조.

27)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19조.

한 각종 요구 이행에 관하여 권한위임 받은 자에게 요구한다.

④ 세관신고인의 입회하에 관세기관이 관세검사서비스 기관에 분석 또는 감정 요구하기 위해 물품 샘플을 채취한다.

⑤ 세관신고인이 물품의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과 관련된 정보, 입증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⑥ 운전수단의 관리자, 운전자에게 규정하는 적당한 경로, 적당한 시간, 적당한 계류장소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⑦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제 2 절 관세의 과세요건 · 징수 · 환급 및 감면

1. 과세요건 및 결정

1) 한국 규정

과세요건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일정한 요건을 말하는 바, 이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효과(조세채권·채무의 성립)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렇게 성립된 조세채권은 아직은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며 조세포탈범도 성립될 수 없다.

한국 관세법상의 관세는 수입관세만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의 과세물건(과세객체, 과세대상)을 수입물품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물품 중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① 관세율표상의 무세품과 관세법상의 각종 면세품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관세법 자체내 수입품의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등과 같이 관세법 이외의 타법에서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법들은 관세에 관한 일반(기준)법인 관세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적용원칙에 의거 관세법에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특별법상의 관세에 관한 감면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내국세를 부과 징수한다.²⁸⁾

한편,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이며, 세액은 “과세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되므로 과세표준은 세율과 함께 세액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관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은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²⁹⁾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세환율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하여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 한국 관세법에서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의 규정에 의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된 날을 말함)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³⁰⁾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관세법에서는 관세는 어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가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이 어떠한 가격을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관세 평가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관세평가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TO 관세평가 협정³¹⁾을 수용할 것이며 국제적인 관세평가 원칙과 동일하다.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CIF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³²⁾.

28) 한국 관세법 제4조.

29) 한국 관세법 제15조.

30) 한국 관세법 제18조.

31)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합리적이고도 중립적인 6가지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제1방법, ②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 제2방법, ③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 : 제3방법, ④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 : 제4방법, ⑤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 : 제5방법, ⑥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 : 제6방법

32) 라공우·강진욱·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2.28. pp.89-90.

2) 베트남 규정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에서 보면 과세대상은 이 비과세 대상 물품³³⁾을 제외한 베트남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과 국내시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반입되는 물품 수출세³⁴⁾, 수입세 과세대상이다³⁵⁾. 한국의 규정은 수입물품에만 과세 대상이나, 베트남에서는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에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세가격은 수출, 수입 물품의 세액 산정과 통계에 사용되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수출,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고 정부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⁶⁾.

이에 따라 베트남 관세법의 내용을 보면 수출, 수입 물품 품목분류는 물품분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율 확정은 현행 세율표에 근거하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관신고인의 품목분류 결과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기관은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분석, 분류, 세율확정을 위해 수출, 수입 물품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세관신고인의 입회하에 물품의 견본을 추출할 수 있다. 세관신고인이 관세기관의 분석, 분류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제기, 민원해결은 법률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 수입 물품 품목분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³⁷⁾.

그리고 베트남 수출입세법에서의 과세표준, 과세방법 및 과세통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33)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3조.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비과세대상이다.

1. 베트남 국경, 국경관문을 빌려 이동되는 물품, 정부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물품
2. 인도적 원조물품, 무상 원조물품
3.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4. 수출 시 국가자원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석유가스 물품

34) 베트남은 일부 전략 광물자원 및 원부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자국 내 자원의 무분별한 채취 방지 및 국내수급 조절을 위한 것이다. 수출세는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및 국경인도조건(DAF, Delivered At Frontier)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출발항에서의 판매가는 화물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다. 수출세가 부과되는 상품으로는 모래, 석회암, 대리석, 화강암, 광석, 원유, 목재 등 주로 광물 및 천연자원이 포함되며 0%에서 최고 40%의 수출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코코넛 3%, 암석·석재류 17%, 철광석 40%, 동광석 30%, 천연고무라텍스 3%, 쇠가죽 10%, 원목 10% 철 및 기타 스크랩 15%의 수출세 부과하고 있다.

35)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2조.

36) 베트남 관세법(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86조.

37) 베트남 관세법(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72조.

먼저, 수출세, 수입세 과세표준은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 수량, 과세가격, 백분율에 따른 세율이며,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수출, 수입 물품의 실제 수량 및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종량세액이다.

둘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①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가격 및 과세 시점 세율표에 기재된 품목별 세율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량세 적용 물품의 경우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 시점에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절대세액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납세통화는 베트남동화며, 외화납부가 허가된 경우 교환이 자유로운 외화로 납부해야 한다³⁸⁾.

베트남의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계약에 따라 수출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며,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국제협약에 부합하고 계약에 따라 최초수입 국경관문에서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다.

과세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베트남동화와 외국통화간 환율은 베트남중앙은행이 과세 시점³⁹⁾에 발표한 교환환율을 적용하며,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과세가격의 확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⁴⁰⁾.

베트남의 세율은 다음과 같은데, 수출물품에 대한 세율은 수출세율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은 우대세율, 특별우대세율, 일반세율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우대세율은 무역관계에서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⁴¹⁾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38)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8조.

39) 수출세, 수입세 과세시점은 세관신고서 등록일이다. 수출세, 수입세는 과세시점의 세율, 과세가격, 환율에 따라 산정된다. 납세자가 세관신고서 등록일 이전에 납세 신고 및 산정을 하였으나 세관신고서 등록시점 환율과 상이한 환율을 적용한 경우 관세기관은 세관신고서 등록시점의 환율에 근거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재산정한다. 전자 세관신고인의 경우 과세시점은 전자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베트남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및 세금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제194/2010/TT-BTC호, 2010. 12. 6) 제 99조. 또한 다수의 수출, 수입 건을 위해 1회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수출, 수입 물품의 경우 수출세, 수입세는 실제 수출, 수입되는 품목별 수량에 근거한 수출, 수입 물품 통관수속일의 세율, 과세가격, 과세환율에 근거한다. 베트남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및 세금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제 194/2010/TT-BTC호, 2010. 12. 6) 제100조.

40)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9조.

② 특별우대세율은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 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며, 특별우대세율은 재무부장관 결정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우대수입세율 안내에 관한 제 45/2007/TT-BTC 호 재무부시행규칙(2007.5.7)의 안내에 따른다⁴²⁾.

③ 일반세율은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일반세율은 정부 규정에 상응하여 각 품목별 우대세율에 비해 그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된다⁴³⁾. 여기서 일반세율은 일반세율은 베트남에 최혜국대우를 실시하지 않거나 수입세관련 특별우대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일반세율은 우대 수입세율표에 규정된 상응하는 품목의 우대세율에 대하여 150%를 일괄 적용하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일반세율} = \text{우대세율} \times 150\%$$

우대세율, 특별우대세율, 일반세율에 명시된 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물품분류는 수출, 수입 물품분류에 관한 제06/2003/ND-CP호 정부시행령(2003.1.22), 수출, 수입 물품분류, 세율적용에 관한 제49/2010/TT-BTC호 재무부시행규칙(2010.4.12)에 규정된 물품분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대수입세율표의 제84장, 제85장에 속하는 수입 기계, 설비로 베트남 수출입 물품목록의 제XVI부 주식 제3호, 제4호, 제5호에 부합하는 세트, 설비라인 및 조립이 되지 않았거나 분리상태로 수입되는 경우 상기 규정 외에 이 시행규칙 제97조 및 제98조의 안내에 따른 신고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위의 3가지 과세 이외에 베트남으로 과잉 수입되는 물품⁴⁴⁾, 보조금을 지원받는 물품, 덤핑물품, 베트남 수출물품에 대해 차별대우가 있는 경우 개별적인 안내 법률

41) 우대세율은 교역관계에서 베트남에 최혜국대우를 실시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베트남에 최혜국대우를 실시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 목록은 산업무역부가 공포한다. 우대세율은 재무부장관이 공포하는 우대수입세율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납세자는 우대수입세율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는 물품 원산지를 자진신고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베트남 통관절차 세관감사, 세관감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및 세금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제194/2010/TT-BTC호, 2010. 12. 6) 제92조 제3호.

42) 베트남 통관절차 세관감사, 세관감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및 세금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제194/2010/TT-BTC호, 2010. 12. 6) 제92조 제3호.b.2.

43)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10조.

44) '과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물품의 수량 또는 가액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또는 유사한 물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직접 경쟁물품과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한 물품이다.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5조. 3호.

규범 문건에 따른 상계관세, 반덤핑세, 반차별 대우관세, 자위세⁴⁵⁾가 적용된다.

2. 납세의무자와 납세

1) 한국 규정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는 실정법상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법률상의 채무자이며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담세자와는 다르다. 과세요건의 인적요소인 납세의무자는 세법상의 권리능력을 갖춘 개인, 법인 또는 일정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

관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된다.⁴⁶⁾ 다만,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 특별납세의무자,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⁴⁷⁾. 자진신고 납부방식에 의한 자진신고를 하여 신고납부서를 받은 경우에도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⁴⁸⁾ 이와 같이 납기를 15일로 정한 것은 관세의 조기징수와 당해 수입물품의 조기 수입신고수리에 의한 유통의 촉진, 보세구역의 체화방지 등의 목적 때문이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함)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⁴⁹⁾,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

45) '자위를 위한 관세조치'는 국내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베트남에 과잉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이다.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5조. 2호.

46)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관세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화주로 본다.(관세법 제19조 ①항 1호)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47) 한국 관세법 제9조 ①항.

48) 여기서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라 함은 교부받은 익일부터 계산하여 15일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민법 제157조).

49) 한국 관세법 제38조2 ①항.

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⁵⁰⁾.

한편, 관세를 소정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관세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도록 자금상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관세의 가산금은 1차 가산금과 증가산금(2차 가산금)이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 1차로 징수하고 이를 한번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가산금을 추가하는 증가산금까지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세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⁵¹⁾.

1차가산금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⁵²⁾. 따라서 1차 가산금은 납기가 경과하였을 경우에 3%가 부과된다.

증가산금은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증가산금)을 1차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⁵³⁾, 이는 우선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1차 가산금이 붙고, 그후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의 증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때 모든 가산금의 총액이 체납세액의 25%를 초과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2) 베트남 규정

베트남 관세규정에서는 납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과세대상에 속한 수출, 수입 물품이 있는 법인, 개인은 수출세, 수입세 납세대상이다⁵⁴⁾라고 규정하고 있다.

50) 한국 관세법 제38조2 ②항.

51) 라공우.강진욱.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2.28. pp.92-93.

52) 한국 관세법 제41조 ①항.

53) 한국 관세법 제41조 ②항.

54)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4조.

또한 납세자의 책임은 수출세, 수입세 납세자는 충실, 정확, 명백한 납세신고의 책임이 있으며 신고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세관신고서를 관세기관에 제출하고, 세액을 계산하고, 국가예산에 세액을 납부한다⁵⁵⁾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세, 수입세 과세 시점은 납세자가 관세기관에 세관신고서를 등록하는 시점이며, 수출세, 수입세는 세율, 과세가격 및 과세시점에 베트남 국가은행 고시하는 교환환율에 따른 과세환율에 의해 산정된다⁵⁶⁾.

한편, 수출세, 수입세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⁵⁷⁾고 규정하고 있다.

① 수출물품에 대한 납부 기한은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다.

② 수입물품이 소비물품인 경우 물품을 인수하기 전 세액을 완납해야 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은 보증기한이나,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다. 보증인의 책임규정은 이 조 제2항 제b호에 따른다.

③ 수입물품이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물자, 원료인 경우, 납부 기한은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275일이다. 특별한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기업의 생산주기, 물자-원료 비축에 부합하여 275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

④ 일시수입-재수출 물품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물품의 경우, 납부 기한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규정에 따른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기한만료일로부터 15일이다.

⑤ 이 조 제1항 제③호 및 제④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수입물품의 납부 기한은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다.

그리고 다음의 두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 조 제1항 제③호 및 제④호 및 제 ⑤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 기한을 적용받는다⁵⁸⁾.

a)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까지 최소 365일 이상 수출, 수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세기관으로부터 무역사기, 탈세 행위가 없고, 미납세액 또는 미납벌금이 없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보고 제도를 잘 집행하고 있다고 확인받은 경우

55)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13조.

56)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14조.

57)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15조. 1호.

58)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15조. 2호.

b) 신용기관 또는 신용기관법 규정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기타 기관이 납세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 보증한 경우. 보증될 경우 납부 기한은 보증기간과 동일하나, 이 조 제1항 제③호 및 제④호 및 제 ⑤호에서 규정한 각 기한을 넘지 못한다.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납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기관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미납 세액 및 벌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납세자가 이 항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세액을 완납해야 한다.

3. 관세법규상 관세감면 및 환급

1) 한국 규정

일정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의무를 무조건 감면하거나, 일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하는 제도이다. 납부세액의 일부면제를 감세라 하고, 전부면제를 면세라고 한다. 감면승인시에 이행조건 이행에 따라 무조건 감면세와 조건부 감면세가 있다.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무조건 감면세에는 일정물품의 수입사실에 의거 감면이 완결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예정된 용도가 아닌 타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감면한 관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고, 사후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외교관용품 등의 면세,⁵⁹⁾ 정부용품 등의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 여행자휴대품·이상물품 등의 면세·재수출면세·재수출감면세·재수입면세·손상감세·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등이 있다.

조건부 감면세는 수입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고 사후관리기간 내에 지정용도 외 사용할 때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따라

59) 관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공관의 공용품과 공관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용품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무조건 면세를 인정한다. 다만 특정의 몇 개품목만은 면세품의 양도를 제한하여 이를 용도 외에 사용할 때에는 양수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면세대상물품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관세법 제88조 ①항).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②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④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⑤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⑥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서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에는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세율불균형물품의 감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종교·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특정물품의 면세·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등이 있다.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⁶⁰⁾에 주요 사항⁶¹⁾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관세의 환급제도는 위약물품의 관세환급⁶²⁾ 이외에도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제도와 과오납의 환급제도⁶³⁾가 있다.

위약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①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②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입물품을 멸각하는 경우의 환급, ③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 안에 있는 동안 멸실·변질·손상된 경우의 환급, ④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중에 있는 위약물품에 대한 부과취소 등의 4가지 종류가 있다.

이와 같은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제도는 위약물품을 수출 또는 멸각하거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멸실·변질·손상된 경우에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그 물품들이 수입되었다 하여도 수입의 실효가 사실상 소멸되기 때문에 일단 징수한 관세를 환급한다. 또한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할납부 중인 관세는 납부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서 징수한 후에 환급을 하는 번잡스러움을 피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세의 부과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다⁶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하고, 또한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

60)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61) 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②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③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④ 감면의 법적 근거, ⑤ 기타 참고사항(시행령 제112조 ①항)

62) 한국 관세법 제106조.

63) 한국 관세법 제46조.

64) 라공우, 강진욱, 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2.28. pp.96-97.

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도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⁶⁵⁾.

또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같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⁶⁶⁾.

2) 베트남 규정

베트남 규정에서 면세⁶⁷⁾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경우 그 수출세 또는 수입세가 면세된다.

① 박람회, 전시회⁶⁸⁾, 상품소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물품, 일정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되는 기계, 설비, 작업용구

② 정부 규정에 따른 이동재산(이사화물)⁶⁹⁾

65) 한국 관세법 제106조 ①, ②항.

66) 한국 관세법 제106조 ③, ④항.

67)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16조.

68)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박람회 참여 또는 제품전시를 위해 일시 수입되는 물품의 재수출 기한은 전시회, 박람회 종료일자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물품이 재수출되지 않는 경우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및 세금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제194/2010/TT-BTC호, 2010. 12. 6) 제101조 제1호. a). 한편, 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박람회 참여 또는 제품전시를 위해 일시수출되는 물품의 일시수출 기한은 물품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박람회 참여 또는 제품전시를 위해 임시 수출된 날로부터 1년 (365일)을 넘지 않는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물품이 재수입되지 않는 경우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101조 제1호. b).

69) 다음을 포함한 베트남 법인 및 개인 또는 외국 법인 및 개인이 규정된 한도내에 베트남으로 반입 또는 반출하는 이동재산(이사화물). 다음을 포함한다.

a) 관할 국가기관의 초청장에 따라 베트남 거주 및 근무를 허가 받은 외국 법인 및 개인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거주 또는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외국으로 반출하는 이동재산(이사화물). b) 베트남 법인, 베트남인이 사업 또는 근무를 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이 허가된 이동재산(이사화물)으로 귀국 시 다시 국내로 재수입하는 경우, 외국으로 반출한 자산에 대해 면세된다. c) 국내거주를 허가받은 재외 베트남 개인, 가정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외국거주가 허가되어 외국으로 반출하는 이동재산(이사화물); 국내거주를 허가받은 외국인이 반입하거나, 외국거주를 허가받아 외국으로 반출하는 이동재산(이사화물); 베트남 거주자가 허가된 개인, 가정이 사용중인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베트남으로 반입하는 경우, 한 가정 당 종류별 한도에 대해 수입세가 면세된다. 베트남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및 세금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제194/2010/TT-BTC호, 2010. 12. 6) 제101조 제2호.

③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정부 규정 한도에 따라 베트남내에서 우대권, 외교면제를 향유하는 외국기관, 개인의 수출, 수입 물품.

④ 가공 계약에 따라 외국을 위해 가공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베트남을 위한 가공을 위해 외국에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

⑤ 출경, 입경 하는 자에 대한 정부 규정에 따른 휴대품 면세기준에 속하는 수출, 수입 물품

⑥ 투자권고사업, 공적개발원조사업 투자계획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물품⁷⁰⁾.

⑦ 석유가스 활동 업무를 위한 수입물품으로서, 석유가스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 기계, 교체 부분품, 전용운송수단,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석유가스 활동에 필요한 물자 등을 포함한다.

⑧ 과학연구 및 기술발전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물품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기계, 설비, 부분품, 물자, 운송수단, 국내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는 기술, 재료, 과학 서적을 포함한다.

⑨ 투자권고 특별분야 영역목록 또는 경제-사회 조건이 특별히 열악한 지역목록에 속하는 사업계획의 생산을 위한 수입 원료, 물자, 부품은 생산시작일로부터 5년 안에서 수입세가 면제된다.

⑩ 외국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할 때 수입 원료,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생산, 가공, 재활용, 조립된 물품. 외국에서 수입 원료, 부품을 사용한 경우, 외국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시 그 물품을 구성하는 수입 원료, 부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⑪ 정부 수상이 결정하는 기타 구체적인 경우

또한 베트남 규정에서는 면세를 검토⁷¹⁾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에 해

70) 투자권고사업, 공적개발원조사업 투자계획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물품에는 다음을 포함하는데, a) 설비, 기계, b) 공장라인의 전용 운송수단 및 근로자 출퇴근용 운송수단, c) 이 항 제a호 및 제b호에 규정된 설비, 기계, 전용 운송수단과 함께 수입되는, 부품, 부속설비, 부분품, 예비부품, 비품, 금형, 약세사리, d) 이 항 제a호에 규정된 설비, 기계와 관계있는 공장라인에 설치되는 설비, 기계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또는 부품, 부속설비, 부분품, 예비부품, 비품, 금형, 약세사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물자, e)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건설물자, f) 호텔, 사무실, 임대아파트, 주택, 상업센터, 기술용역, 슈퍼마켓, 골프장, 여행단지, 체육단지, 오락여가단지, 진료 병원시설, 교육, 문화, 금융, 은행, 보험, 회계, 자문 용역 분야 투자사업계획을 위한 정부 규정 목록에 따른 최초 수입 설비물품 등을 말한다.

71)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17조.

당되는 경우 수출, 수입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면세 검토대상이다.

첫째, 국방, 안보, 교육 및 훈련 업무에 직접 전용되는 수입물품. 이 법률 제16조 제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과학연구 업무에 직접 전용되는 수입물품.

둘째, 정부 규정 한도내에서 외국 기관, 개인이 베트남 기관, 개인에게 기증하는 선물, 기증품, 견본, 또는 그 반대의 경우

한편, 베트남규정의 감세⁷²⁾를 보면, 관세기관의 감시과정에 수출, 수입 물품이 훼손, 분실 되었으며 심사기관, 법인의 감정결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감세가 검토되며, 감세비율은 물품의 실제 손상비율에 상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환급⁷³⁾규정을 보면, 다음의 각각 경우 납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수입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이 세관의 감시하에 국경관문의 창고 및 보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 ②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한 수출, 수입 물품이 실제로 수입, 수출되지 않은 경우
- ③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한 물품 보다 실제 수출, 수입이 적은 경우
- ④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수입 원료, 물자가 수입세를 기 납부한 경우
- ⑤ 이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된 면세대상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물품으로 수출세, 수입세를 기 납부한 경우
- ⑥ 수출세를 납부하고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 해야 하는 경우
- ⑦ 수입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해야 하는 경우
- ⑧ 수입물품이 투자사업 실현을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허가를 받은 법인, 개인의 기계, 설비, 용구, 운송수단으로서 건설, 조립공정, 생산업무에 사용되거나, 기타 목적으로 수입세를 기 납부한 경우

한편, 세관신고,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오류가 발생한 날로부터 오류를 검사 발견한 날까지 365일을 넘지 않으면 과납세액에 대해 환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급 책임 및 기한⁷⁴⁾의 규정을 보면 환급심사 국가기관은 충분한 환급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할 책임이 있으며, 서류가

72)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18조.

73)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19조.

74)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20조.

충분하지 않거나 환급관련 법률에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환급대상자의 환급신청 서류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심사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서류보완 요청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그리고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도록 환급이 지체되는 사유가 환급심사 담당 국가기관의 실수에 있으면, 환급하여야 할 금액외에 환급지연 되는 날로부터 환급되는 날 까지 환급시점 무역은행 대출이자율 수준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 3 절 탄력 관세와 기업우대제도 및 형벌

1. 탄력 관세 제도

1)한국 규정

(1) 개요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는 국내산업 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이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율은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법으로 규정해놓은 기본세율의 경제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기본세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상황 등에 따른 관세율 인상 또는 인하가 필요한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기본세율 개정이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제한된 법률 안에서 행정부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탄력관세제도이다.

(2) 탄력관세의 종류

탄력관세제도의 종류로는 현행 관세법상 다음과 같이 관세법 제51조에서부터 제75조까지에 규정된 다음의 9가지 종류가 있다. 즉, 덤핑방지관세(제51조), 상계관세

(제57조), 보복관세(제63조), 긴급관세(제65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68조), 조정관세(제69조), 할당관세(제71조), 계절관세(제72조), 편익관세(제74조)가 있다.

첫째,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덤핑)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실질적인 피해)되었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율의 규정에 의한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덤핑되는 물품의 국내시장으로 유입되어 국내산업의 타격, 고용기회의 상실 등 경제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항조치를 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방법은 덤핑의 효과를 상계하는 만큼의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 이외에 정상거래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상계관세란 수출국에서 제조·생산·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따라서 상계관세가 발동되려면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내산업 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됨으로써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셋째, 보복관세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보복을 목적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를 할증부과하는 제도를 보복관세라 한다. 한 나라가 보복관세조치를 취하면 상대방 국가도 이에 대응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마

침내 관세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관세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보복관세는 각국이 다 같이 좀처럼 발동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타국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⁷⁵⁾

넷째, 긴급관세란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수입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함)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 등”이라 함)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 등”이라 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함)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⁷⁶⁾.

다섯째, 특정국물품긴급관세는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이하 “특정국물품”이라 함)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때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긴급관세”라 함)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⁷⁷⁾

75) 한국 관세법 제63조 ①항. ①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②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리고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국가.물품.수량.세율.적용시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세법 제63조 ②항).

76) 관세법 제65조 ①항.

77) 한국 관세법 제67조의2 ①항.

①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여기서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라 함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을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관

여섯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란 1993년 12월 타결된 UR 농림축산물 관세협상 결과 1994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관세법에서 수용한 것이다. UR 협상에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당초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가 농림축산물의 일시적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세제도이다.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함)를 부과할 수 있다(관세법 제68조 ①항). 그리고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⁷⁸⁾.

일곱째, 조정관세란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이 계속 확대·시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이를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대외무역법 등에 의하여 새로이 수입이 자유화되거나 수입이 자유화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물품 중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가져오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⁷⁹⁾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 제67조의2 ②항).

②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및 마카오를 제외)을 말하며(시행규칙 제89조의2 ①항),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특정국물품긴급관세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시행규칙 제89조의2 ②항).

78) 한국 관세법 제68조 ②항.

79) 조정관세 부과대상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한국 관세법 제69조).

①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④ 농림축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덟째, 할당관세제도란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의 범위내에서 수입될 때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제도⁸⁰⁾이다. 이를 이중관세율제도라고도 한다. 이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생산자측의 요청과 이 물품을 싼 값으로 입수하려는 수요자측의 상반되는 요청이 공존하고, 더욱이 그 물품의 국내 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 이중관세율에 의거하여 이들 양자의 요청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는 수입수량통제와 함께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홉째,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 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⁸¹⁾. 이는 농산물과 자연산품 등은 계절에 따라 가격이 많이 변하는데,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세율의 조정에 의거 제거하려는 것이 이 제도이다. 또한 이러한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⁸²⁾.

열 번째, 편익관세란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않는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될 때 조약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는 관세상의 혜택의 범위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무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조약에는 최혜국약정이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조약을 이미 체결한 타국에 대하여 부여한 무역상의 혜택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준 나라와 동등한 대우, 즉 최혜국대우를 상대방국가에게도 공

80)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 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관세법 제71조 ①항).

①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1) 한국 관세법 72조 1항.

82) 한국 관세법 72조 2항.

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편익관세란 최혜국대우와 비슷하지만 최혜국대우는 타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편익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편익관세는 자국이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의 범위내에서 편익을 주는 것이고, 상대방국가는 편익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의한 편익의 한도 안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함)을 부여할 수 있다⁸³⁾고 규정하고 있다.

2) 베트남 규정

베트남의 관련규정은 수출입세법에서 물품수입 시 자위, 반덤핑, 반보조금, 반차별을 위한 관세조치⁸⁴⁾와 관련된 개념만을 규정하고 타법에서 자세히 나열하고 있다.

이 법률 우대세율, 특별우대세율, 일반세율 외에도, 수입물품에는 다음의 관세조치가운데 하나가 적용되어야 한다.

① 베트남으로 과도하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의 가중은 베트남으로의 외국물품 수입에 대한 자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베트남에 수입되는 덤핑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베트남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반덤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보조금이 지급되어 베트남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는 베트남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반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④ 수입세에 차별대우가 있거나 기타 차별대우가 있는 국가, 국가연합 또는 영토 지역으로부터 연원하여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반차별대우 관세는 국제 무역상 최혜국대우 및 국가대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해,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돼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⁸⁵⁾), 특별특혜관세율

83) 한국 관세법 제74조 ①항.

84)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11조.

85) 특혜(MFN)관세율 적용대상 국가(163개국)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오스트리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베트남은 1995년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이 되었으며 자동적으로 AFTA(Asean Free Trade Area)에 가입되었다. 이에 CEPT(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에 따라 ASEAN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수입 관세를 0~5%까지 인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초기 5년간 베트남의 관세 인하 실적은 미미했으나, 2003년도 이후 그간 고율(30~100%)의 관세를 부과했던 1,000개 이상의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 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한-베트남 FTA는 2012년 9월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2월에 실질 타결되고,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정식 서명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한-베 FTA를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한-베 FTA를 통해 섬유·직물·자동차부품 등 우리기업의 중간재 수출 뿐 만 아니라, 최근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2016년은 한-베 FTA 발효 2년차로써, 본격적인 FTA 활용을 통해 우리기업의 對베트남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현행 관세율이 25%이며 양허유형이 5년 철폐인 믹서의 경우 2016년 한-베 FTA 발효시 5년 후인 2020년에 관세가 철폐되나, 금번 연내발효에 따라 4년 후인 2019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영국, 싱가포르,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불가리아, 칠레, 쿠바, 체코,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몰타, 모잠비크, 팔레스타인, 페루, 북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시리아,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예맨,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미국, 일본 등 163개국이다.

<표Ⅲ-1> 한-베트남 FTA 주요 품목 양허 현황

주요 품목(관세율)	양허유형
세탁기(25%), 냉장고(25%), 에어컨(30%), 전기밥솥(20%)	10년 철폐
믹서(25%)	5년 철폐
화장품(10~25%)	10년 철폐
자동차부품(7~25%)	5~10년내 철폐
차량용 엔진(5~25%)	3~7년 철폐
화물차(5톤~20톤, 30%) 및 승용차(3,000cc 초과 68%) 일부 품목	10년 철폐
합성스테인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	3~10년 철폐
아연도강판(5%), 동조가공품(5~10%), 철강제가공품(10%)	7~10년 철폐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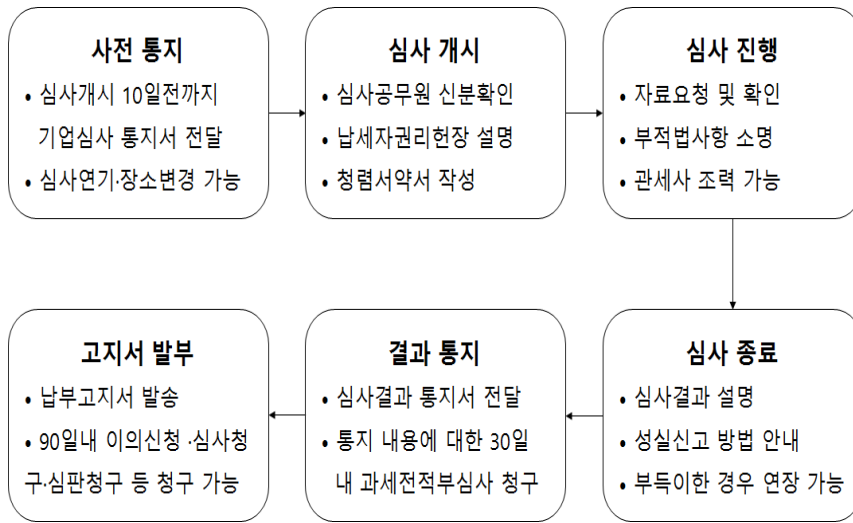
2. 심사 및 기업우대 제도

1) 한국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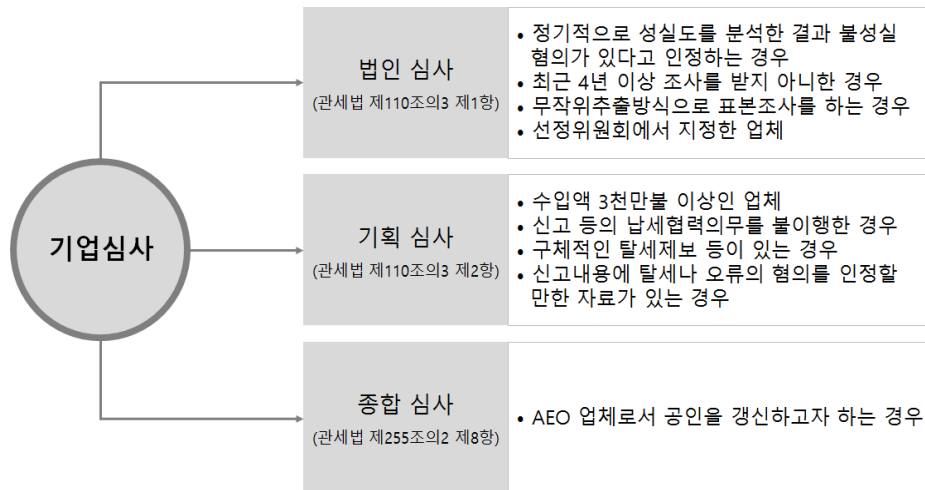
관세심사는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심사는 업체에서 위법적이거나 고의적인 아닌 어떠한 실수로 관세 신고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될때 적법하게 고쳐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반면 관세조사는 탈세 및 고의적인 신고 누락 등 명백한 혐의가 있을때 경찰 및 검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범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기업심사 절차는 사전통지 →심사 개시 →심사 진행 →심사종료 →결과통지 →고지서발부 순으로 진행된다.



<그림Ⅲ-4> 기업심사(관세심사) 절차



<그림Ⅲ-5> 기업심사(관세심사) 종류

한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에 관한 규정으로⁸⁶⁾ 관세청장은 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86) 한국 관세법 제255조의 2.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⁸⁷⁾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장은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이에 따른 심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⁸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나 공인 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

87) 한국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3.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88) 법 제255조의2제3항에서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평가하고⁸⁹⁾,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⁹⁰⁾.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⁹¹⁾할 수 있으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⁹²⁾

2) 베트남 규정

물품, 운송수단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아야 하며, 세관을 통한 적정 운송 경로, 시간 또는 기타 지점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세관검

89) 한국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4. ① 관세청장은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평가(이하 "준수도 측정·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 및 이 영 제258조제1호에 따른 특별통관 대상 업체,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90) ②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준수도 측정·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1) 한국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 ② 법 제255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2) 한국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

사, 세관감시는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의 효과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법 적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⁹³⁾.

관세기관은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리고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운반 차단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위험관리를 적용한다.

관세청의 임무 활동의 위험관리는 통관정보 수집, 처리; 세관신고인 범규준수 평가, 위험수준 평가의 기준 수립 및 조직 구성; 적정 세관관리 조치방안 마련을 포함한다. 관세기관은 관세업무 활동중에 위험관리를 적용하는 업무데이터 통합처리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업무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응용한다.

재정부 장관은 관세업무 활동중 세관신고인의 법률준수도, 위험수준 분류 및 위험관리 적용 평가기준을 규정한다⁹⁴⁾

한편, 세관신고인의 권리와 의무⁹⁵⁾중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관세기관으로 하여금 물품, 운송수단에 관한 세관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통관절차, 관세관련 통상적인 법률을 안내하게 할 수 있다.
- ② 관세기관에 정보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공급한 다음, 관세기관에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 사전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세관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관신고 전에 관세공무원의 입회감시 하에 물품을 사전 열람하고, 물품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 ④ 아직 통관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 관세기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이미 검사한물품에 대하여 관세기관에 실물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물품 통관, 운송, 기타 기관들과 관련 있는 절차의 수행을 위한 통관서류의 사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⑥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수 있다.
- ⑦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이 야기한 손해를 국가 보상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요구 할 수 있다.

한편, 화주, 운송수단주인 세관신고인은 다음 의무를 진다.

93)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16조.

94)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17조

95)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18조.

- ① 세관신고 및 통관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 ② 관세기관이 물품에 대하여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신고한 내용 및 제공, 제시한 각종 첨부서류의 정확성에 대하여, 업체에 보관중인 서류와 관세기관에 보관중인 서류 사이의 정보 내용의 통일성에 대하여 법률 앞에 책임을 진다.
- ④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진행 중에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의 결정 및 요구를 이행한다.
- ⑤ 통관된 물품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법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신고서 등록일로 부터 5년 동안 통관서류를 보관 한다; 법률이 규정하는 동안, 통관된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장부, 회계서류 및 기타 첨부서류를 보관 한다; 관세기관이 이 법 제32조, 제79조 및 제80조에서 규정에 따라 세관검사 하는 때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정보, 입증서류를 제공한다.
- ⑥ 관세공무원이 물품, 운송수단 실물검사 하는 관련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수단을 배치한다.
- ⑦ 조세, 수수료, 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 하고 기타 각종 금전적 의무를 이행한다.

그리고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상의 각 정보기준들을 충분하고, 정확, 명확히 신고 하여야한다. 관세 신고는, 정부 규정에 따라 종이 세관신고서상에 신고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방식에 따라 수행된다. 등록된 세관신고서는 통관수속을 처리할 효력을 갖는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정책, 조세정책은,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신고서 등록시점에서 적용 된다.⁹⁶⁾

통관서류 검사 시, 관세기관은 세관신고 내용의 정확성, 충분성과 통관서류에 속하는 첨부서류와의 부합성을 검사하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 정책, 조세정책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 통관서류 검사는 전자 데이터 처리시스템을 통하거나, 관세공무원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진다⁹⁷⁾

96)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9조

97)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32조

관세신고⁹⁸)시에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상의 각 정보기준들을 충분하고, 정확, 명확히 신고하여야 하며, 관세 신고는, 정부 규정에 따라 종이 세관신고서상에 신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방식에 따라 수행된다. 그리고 등록된 세관신고서는 통관수속을 처리할 효력을 갖는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 정책, 조세정책은,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신고서 등록시점에서 적용된다.

한편, 세관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세관신고인은 다음 각 경우 보충신고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통관수속 하고 있는 물품의 경우: 관세기관이 통관서류 직접 검사를 통보하는 시점 이전과 통관된 물품의 경우: 수출, 수입 허가서; 물품 품질, 의료, 문화, 동물, 식물 검역,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보충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일로부터 60일 기한 이내 및 관세기관이 통관후 세무조사, 감사를 결정하는 시점 이전에 하면 된다.

베트남 관세법상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AEO) 보면, 먼저 적용요건⁹⁹)은 연속 2년 동안 관세에 관한 법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하고, 매년도 규정하는 수준에 달하는 수출, 수입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자 통관절차, 전자 국세절차를 이행한다; 관세기관과 연결되는 업체 수출입활동 관리정보기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 하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회계,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잘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과 우대기업에 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 지역(Territories)에 속하는 우대기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우대제도가 적용되며, 정부는 요건, 공인절차, 연장, 일시 정지, 정지, 우대제도, 우대제도 적용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¹⁰⁰)로는 법률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또는 법률준수 평가를 위한 랜덤검사를 제외하고는, 통관수속 수행과 정중에 통관서류에 속하는 관련 입증

98)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9조.

99)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42조.

100)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43조. 우대제도 적용기업의 책임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관세기관에 회계감사 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제공하고, 관세기관의 검사, 감시에 관한 각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업체에 대한 조세, 회계 관련 법률위반 처리 결정내용을 관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44조.

서류 검사 면제, 물품 실물검사 면제를 하며,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관신고서, 또는 세관신고서를 대신하는 입증서류로도 통관수속도 가능하다. 세관신고인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 또는 세관신고서를 대신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전한 세관신고서 및 통관서류에 속하는 관련 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세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품에 대한 조세수속 수행 시 우대된다.

3. 관세 형벌

1) 한국 규정¹⁰¹⁾

관세법에 대한 처벌을 관세형벌이라고 한다. 각종 행정법규에서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명령·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법상의 처벌을 행정벌이라고 한다. 관세형벌도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세행정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이다.

행정벌은 행정제재와 구별된다. 오늘날 행정벌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법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제재란 특정인에게 행정적인 수단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출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주어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인데, 이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관세형벌

특가법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는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세법상의 처벌에 우선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SOFA 임시특례법상의 관세범죄

101) 라공우·김희철, “한국과 중국의 관세형벌 규정의 비교 연구”, 관세학회지, 제 18권 제1호, 2017.2. pp.72-77. 참조.

SOFA 임시특례법 제5조 제④항에는 SOFA에 의한 면세대상자(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에 면세대상자로 규정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동협정 제15조에 의한 초청예약자를 말함) 또는 면세대상자였던 자가 SOFA 규정에 의거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보고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밀수행위처벌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출입의 금지 물품¹⁰²⁾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69조 ①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점을 알고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관세법 제271조 ①항).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를 범할 목적으로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며(관세법 제271조 ②항),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271조 ③항).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41조 ①항)는 규정과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관세법 제91조 내지 제94조, 제96조 및 제97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및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간이통관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관세법 제241조 ②항)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고 및 신고수리절차와 간이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수출입(반송 포함)한 경우가 무신고 수출입죄이다.

이는 무신고 수출입죄의 객체는 수출입의 신고를 받아야 할 모든 수출입물품이다. 여기서 수출입신고수리를 얻어야 할 물품이란 수출의 경우는 내국물품이고 수입의 경우 및 반송의 경우는 외국물품이다. 그런데 관세법 제241조 제②항에 의해 신고

¹⁰²⁾ 수출입 금지품의 객체는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① 헌법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말한다.

수리 절차없이 간이한 절차에 의거 통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간이통관절차도 하나의 신고수리절차이므로 이러한 간이통관대상물품들이 간이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수리수출입죄가 성립된다(라공우, 201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69조 ②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이다.

또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69조 ③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이다.

(4) 밀수관련 운반기구 등의 처벌

한국의 관세법에서는 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관세법 제272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밀수출입죄의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¹⁰³⁾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관세법 제273조 ①항). 이는 밀수출입죄, 부정수출입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그 물품의 소유자가 누구이든 불문하고 몰수하거나 파괴하여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여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관세법 제273조 ②항).

한편,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103) 여기서 특수가공이란 여행자가 귀금속 등 고가품을 은닉하기 위하여 가방 바닥에 이중장치를 하거나 금괴를 은닉하기 위하여 가방손잡이를 뜯어 고친다거나 선원이 밀수품을 은닉하기 위하여 선실벽이나 기름탱크에 물품을 감추는 것 등을 말한다(라공우, 2011).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274조).

(5)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무역의 활성화됨으로써 전자증권 및 신용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위조·변조가 쉽고,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어렵다. 한국의 관세법에서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68조의2 ①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68조의2 ②항).

① 관세법 제327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이다.

② 관세법 제327조의3(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제②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이다.

③ 관세법 제327조의3(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제③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이다.

(6) 관세포탈죄

관세포탈죄는 1996년 12월 30일 관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부정수출입죄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관세의 포탈이나 부정감면·부정환급 등을 방지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간이수입신고 및 입항전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

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①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¹⁰⁴⁾

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②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그러나 물품의 수입신고(간이수입신고 및 입항전 수입신고 포함)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¹⁰⁵⁾

(7) 가격조작죄

신고납부 보정신청(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 수정 및 경정(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수출이나 수입, 반송(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입항전 수입(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70조의2). 이러한 예로서 무관세품목이지만 복지차원에서 정부지원대상인 물품을 수입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가격을 높게 신고하거나 재산의 해외도피를 위해 수출가격을 속여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정재완, 2016).

(8) 체납처분 면탈죄 및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75조의2 ①

104) 대한민국 관세법 제270조 1항

105) 대한민국 관세법 제 270조 2항

항).

또한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75조의2 ②, ③항). 체납처분 면탈죄는 처음부터 관세포탈을 의도하여 나중에 범죄가 탄로 났을때의 부족세액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 및 그 조력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정재완, 2016).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는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제275조의3).

(9) 허위신고죄

가.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① 제19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② 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를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③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④ 수출,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함(관세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⑤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⑥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금지 의무(관세법 제248조제3항)을 위반한 자이다.

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 ③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④ 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제2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제5호(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금지) 및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⑤ 다음에 해당 하는자. 다만, 과실로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제12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제27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재수출감면세)제2항, 제109조(개항 등에의 출입) 제1항(다른 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제1항, 제136조(출항절차)제2항, 제148조(관세통로)제1항,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보세화물운송주선) 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나)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제2항, 제88조(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제2항, 제97조(재수출면세) 제2항 및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라)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다.

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자.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나)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또는 제213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④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⑤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라. 500만원의 벌금

등록하지 아니한 보세사의 근무 금지규정(제1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베트남 규정

베트남의 관련 규정에서 납세자는 관세기관의 세액, 벌금액, 처벌형식에 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액, 벌금을 납부하고 처벌형식을 따라야 하나 동시에 민원, 고소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

할 수 있다¹⁰⁶⁾.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세액관련 위반처리의 내용을 보면, 납세자가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¹⁰⁷⁾고 규정하고 있다.

① 규정된 납부 기한 만료일 또는 세액관련 위반처리결정에 명시된 기한 만료일을 지나 세액,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세액과 벌금 납부이외에도 연체된 금액의 0.1%(1,000분의 1)가 연체일자에 따라 매일 가산된다. 연체일이 90일을 넘는 경우,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조치를 당한다.

② 이 법률의 규정에 맞는 세관신고, 납세를 하지 않는 경우, 사안의 성질과 위반정도에 따라 조세에 관한 행정위반으로 처리된다.

③ 허위 납세신고, 탈세의 경우, 이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세액의 납부 외에도 사안의 성질과 위반정도에 따라 사기세액의 1 내지 5배에 상응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④ 조세에 관한 처리결정에 따른 세액,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조치의 시행이 강제된다.

가. 세액,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의 은행, 신용기관, 국고기관에서 인출하여 송금한다. 은행, 신용기관, 국고기관은 관세기관 또는 국가심의회기관의 조세에 관한 처리결정에 따라 국고에 세액,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의 계좌에서 금액을 출금할 책임이 있다.

나. 세관신고서가 등록된 관세기관은 미납된 세액, 벌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임시 압류하거나 재산을 유치할 수 있다. 관세기관이 물품을 임시 압류하거나 재산을 유치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도 납세자가 세액,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세기관은 세액,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산을 경매할 수 있다.

다. 관세기관은 납세자가 해당 세액,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납세대상자의 물품에 대한 수입수속을 하지 않는다.

⑤ 사기 또는 탈세 행위가 발견된 경우, 관세기관은 사기, 탈세가 발견된 시점부터 이전 5년간 해당 행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할 책임이 있다. 오류가 있었던 경우, 관세기관은 오류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이전 365일 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세액을

106)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22조.

107)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제23조.

추징 또는 환급할 책임이 있다.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작은 오류들을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부족세액을 국고에 납부하는 경우, 각 종 처벌이 적용 면제된다.

⑥ 고액 탈세 또는 탈세 행위로 행정위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뒤따른다.

한편, 세관공무원의 위법 또는 관련 있는 기타 개인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면, 세관공무원 또는 관련 있는 기타 개인이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세액을 점용하거나 탈취한 경우, 점용, 탈취한 세액을 전부 국고에 배상하고, 위법의 성질과 정도를 감안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규율처리, 행정처벌 또는 형사책임이 수반된다. 또한 세관공무원의 책임정신이 부족하여 고의적으로 이 법률의 위반행위자를 묵과하거나 이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의 성질, 정도에 따라 규율처리, 행정처벌, 또는 형사책임이 수반된다. 사안의 성질과 정도를 감안하여 경고, 행정처벌,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 수출입세법 관련 처벌조항을 보면 세액관련 위반 처리와 세관공무원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 4 장 베트남의 관세규정과 통관절차상 문제점

제 1 절 베트남의 통관절차

1. 수출입통관 개관

1) 통관절차 대리인

먼저,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요건으로는 물품 포워딩서비스 또는 통관절차 수행 대리 사업분야를 포함하는 사업등록 증명서 또는 영업등록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통관절차 수행을 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자통관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각종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보기술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직원은 다음 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베트남 국민이어야 한다. 첫째, 경제, 법률, 기술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세관신고업무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셋째, 관세기관은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직원번호를 발급한다.

한편, 관세총국 총국장은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활동을 공인, 일시 정지, 종료를 결정하며, 세관신고업무 전문자격증을 발급하고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직원번호표를 발급 및 회수한다¹⁰⁸⁾.

통관절차 수행 대리인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직원은 신 관세청법에서 규정하는 세관신고인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한다.

2) 통관절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관절차 대리인은 세관신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바, 통관수속 시 세관신고인은 다음 책임이 있다.

① 세관신고서 신고 및 제출: 이 법의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통관서류에 속하는 입증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 한다(통관서류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② 물품, 운송수단을 실제 물품, 운송수단 검사하기 위한 곳으로 정해지는 곳으로 운반한다.

③ 조세, 수수료,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기타 관련 있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고 기타 금전적 의무를 이행한다.

한편, 통관수속 시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통관서류를 접수 및 등록 한다.

② 통관서류를 검사하고, 물품, 운송수단의 실물을 검사한다.

③ 조세, 수수료,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기타 관련 있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세 및 기타 수입금 수납을 추진한다.

④ 통관절차를 완료한 물품의 통관, 물품의 반출하고, 운송수단을 확인 한다¹⁰⁹⁾.

3) 통관절차 수행 장소

108)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0조.

109)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1조.

통관절차 수행 장소는 관세기관이 통관서류를 접수, 등록 및 검사하고, 물품, 운송 수단 실물을 검사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통관서류 접수, 등록 및 검사 장소는 관세국 주소지, 관세지국 주소지를 말한다.

그리고 물품 실물검사 장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육로, 국제 화물환적 철도역, 민영 국제공항; 국제 우체국;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이 있는 바다 항구, 내륙수로항; 내륙에 설치된 물품 수출, 수입 관문항의 세관구역의 검사장소

② 관세지국 주소지

③ 관세총국 총국장의 결정에 따른 집중 검사장소

④ 생산기지, 공사장의 검사장소; 박람회, 전시회 개최 장소

⑤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 보세창고 구역의 검사장소, CFS·컨테이너화물기지

⑥ 육로(국경) 세관구역의 베트남 세관과 상대국 세관간의 공동검사 장소

⑦ 기타 관세총국 총국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결정한 장소를 말한다.

한편 기관, 조직/법인, 개인은 육로, 국제 화물환적 철도역, 민영 국제공항;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이 있는 바다 항구, 내륙수로항; 내륙에 설치된 물품 수출, 수입 관문항을 기획, 설계할 경우 권한을 갖는다. 경제구, 공업구, 非관세구(Non-Tariff Area) 및 기타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장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검사, 세관감시 요구를 충족시키는 통관수속 장소, 수출입 물품 보관 장소를 배치할 책임이 있다¹¹⁰⁾. 이는 한국의 파출 통관지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4) 관세기관의 통관절차 수행시간

관세기관은 세관신고인이 통관서류를 제출 제시한 다음 즉시 통관서류를 접수, 등록, 검사 한다.

세관신고인이 이 법의 제21조 제1항 제①호 및 제②호에서 규정하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각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행한 후, 관세공무원의 물품, 운송수단의 서류검사 및 실물검사 완료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① 서류검사 완료는 관세기관이 통관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2 근무시간 이다.

110) 베트남 관세청법(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2조.

② 물품 실물검사 완료는 세관신고인이 관세기관에 물품을 충분히 제시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8 근무시간이다. 물품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품질, 의료, 문화, 동물 및 식물 검역, 식품 안전에 관한 전문분야 검사대상에 속하는 경우, 물품 실물검사 완료 기한은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검사결과를 입수한 시점으로부터 계산된다. 한편, 물품이 대량이거나 많은 종류이거나 검사가 복잡한 경우,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관세기관의 장이 물품 실물검사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나, 기간연장 기간은 최대 2일을 넘지 않는다.

③ 운송수단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 하역, 승객의 출국, 입국의 적시성과,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세기관은 수출입 물품의 하역, 승객, 운송수단의 출국, 입국의 적시성을 보장하기위하여 명절,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또는 세관신고인의 신청을 근거로 세관 활동지역의 실제상황에 맞게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¹¹¹⁾.

5) 통관서류

통관서류는 다음을 포함하는데, 세관신고서 또는 세관신고를 대체할 수 있는 입증서류, 관련 첨부서류(각 경우에 따라, 세관신고인은 물품 매매계약서, 상업송장 (인보이스), 운송장 (B/L, AWB), 물품 원산지 증명서류, 수출 및 수입 허가서,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전문검사 면제 통보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품과 관련된 각종 입증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통관서류에 속하는 입증서류는 종이 서류 또는 전자 서류이며, 전자 서류는 전자무역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완결성 및 형식성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통관서류는 관세기관의 주소지에서 관세기관에 제출 제시되어야 하며, 국가 싱글윈도우 체제를 적용하는 경우, 전문분야 (담당) 국가 관리기관은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양식으로 수출 및 수입 허가서, 전문 검사결과, 검사면제 통보 문서를 송부한다¹¹²⁾.

6) 통관서류 제출기한

111)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3조.

112)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4조.

세관신고서 제출기한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 및 운송수단인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수출물품의 경우, 세관신고인이 통보한 장소에 물품을 집결한 다음 제출하며,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늦어도 4시간 전이다. 꾸리어(국제택배) 서비스로 내보내는 수출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늦어도 2시간 전이다.

② 수입물품의 경우,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날 이전, 또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30일 기한 내에 제출한다;

③ 운송수단의 세관신고서 제출기한은 이 법의 제69조 제2항¹¹³⁾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그리고 세관신고서는 등록된 날로부터 15일 기한 내에만 통관수속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통관서류에 속하는 관련 첨부서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는데, 전자 세관신고의 경우, 관세기관이 통관서류 검사, 물품 실물검사 진행 시, 세관신고인은 통관서류에 속하는 각종 종이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국가 싱글윈도우 정보시스템에 있는 입증서류들은 제외한다. 그리고 종이 세관신고서 신고의 경우,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를 등록하는 때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 하여야 한다¹¹⁴⁾.

7) 통관서류 검사

통관서류 검사 시, 관세기관은 세관신고 내용의 정확성, 충분성과 통관서류에 속하는 첨부 서류와의 부합성을 검사하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 정책, 조세정책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

113) 법 제69조 2항. 세관신고서, 관련 입증서류를 신고 및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국경통과 운송수단의 경우, 최초 입국하는 국경관문 세관에 도착하는 즉시, 그리고 운송수단이 최종 출국하는 국경관문 세관을 지나가기 전에 수행된다. b) 입국 해상 운송수단의 경우, 항무사무소가 입국 운송수단이 도선사 마중 위치에 도착했다는 통보한 후, 늦어도 2시간 내에 수행된다; 출국 해상 운송수단의 경우,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전, 늦어도 1시간 내에 수행된다. c) 출입국 항공 운송수단의 경우, 입국 운송수단이 국경관문 세관에 도착하는 즉시, 그리고 운송회사가 수출화물, 출국승객 승기 절차를 종료하기 전에 수행된다. d) 출입국 철도, 육로 및 수로 운송수단의 경우, 운송수단이 최초 입국 국경관문 세관에 도착한 후 즉시, 그리고 운송수단이 국경관문 세관에서 최종 출국하기 전에 수행된다. 3. 국방, 안보 목적에 사용되는 군수 운송수단, 기타 운송수단은 통관수속 하여야 하고,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아야 한다. 4. 정부는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규정한다.

114)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25조.

통관서류 검사는 전자 데이터처리시스템을 통하거나, 관세공무원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 진다¹¹⁵⁾.

8) 물품 실물검사

아래 각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실물검사를 면제하는데, 긴급 요구물품, 국방, 안보 업무 전용 물품, 정부 수사의 결정에 따른 기타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물품 등이다.

또한 여기에서 법률위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기 물품과 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은 검사대상이고 실물검사는 위험관리 적용을 토대로 수행된다.

물품 실물검사는 관세공무원이 직접 또는 기계, 기술 설비, 기타 업무상 수단에 의해서 수행하게 되는데, 물품 실물검사는 세관신고서를 등록하고 물품이 검사장소에 반입된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관신고인 또는 그의 합법적 대리인 입회하여야 한다¹¹⁶⁾.

9) 물품의 반출

물품 반출이라 함은 다음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때 관세기관이 물품의 수출, 수입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먼저, 수출, 수입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납부하여야 할 공식 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물품이며, 세관신고인 자율로 신고, 세액계산 한 세액을 납부 했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증하도록 한 세관신고인이다. 그리고 납부하여야 할 공식 세액 확정기한은 물품 반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으며, 감정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이 기한은 감정 결과를 얻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한편, 세관신고인이 관세기관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 확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 권한이 있으며, 이의제기, 이의제기 처리는 이의제기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¹¹⁷⁾.

115)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32조.

116)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33조.

117)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36조.

10) 물품의 통관

물품은 통관절차를 완료한 다음 통관된다. 세관신고인이 통관절차를 완료 하였으나 규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물품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세액에 대하여 보증하게 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납세 기한이 적용되는 때 통관 된다.

그리고 화주가 벌금 형식으로 관세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을 받고 그 물품이 수출, 수입을 허용 받은 경우, 물품은 관세기관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처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보증하게 하였으면 통관될 수 있다.

또한 수출, 수입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분석, 감정 하여야 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기관은 검사, 분석, 감정 결론,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검사기관의 검사면제 통보를 기초로 수출, 수입 될 물품을 확정된 다음 물품을 통관하여야만 한다.

다만, 긴급 요구물품; 안보 및 국방 전용물품; 외교행낭, 영사행낭, 우대 및 면제 권한 있는 기관, 기구, 개인의 수화물은 이 법의 제50조¹¹⁸⁾ 및 제57조¹¹⁹⁾의 규정에 따라 통관된다¹²⁰⁾.

2. 수출통관 절차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는 ① 선적 일정 확인 → ② 서류 준비 → ③

118)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50조 긴급요구 서비스물품, 안보 및 국방 전용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1. 긴급요구 서비스물품은 자연재해, 역병의 피해극복 서비스 용품 또는 긴급 구조요구 서비스용품인 물품이다. 2. 안보 및 국방 업무 전용물품: a) 안보 및 국방 업무 전용물품은 국방부 부장 또는 공안부 부장의 확인문서에 따르고, 세관신고인은 통관수속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관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다. 관세기관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관신고서를 기초로 물품의 통관을 결정한다.

119)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제57조 우대 및 면제 권한 있는 기관, 조직/법인, 개인의 외교행낭, 영사행낭, 수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1. 이 법에서 규정하는 우대, 면제 제도는 통관신고, 세관검사에 대한 우대, 면제를 포함한다.

120)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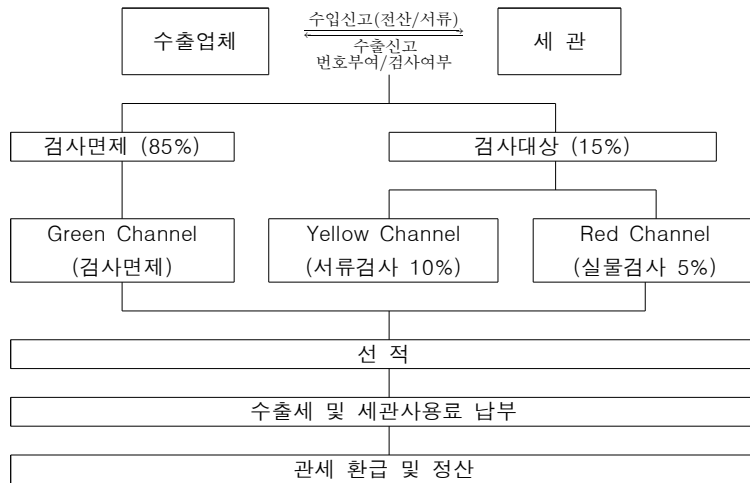
e-customs 신청, 세관의 네트워크 통해 신청번호 확인 → ④ 면장 신청 및 승인→ ⑤ 컨테이너 입고 후 적재 → ⑥ 컨테이너를 CY(Container Yard)로 이송 → ⑦ 선적 전 검사 → ⑧ 면장과 Booking Note를 세관에 신고 → ⑨ 통관 종료 후 선적 → ⑩ 선적 후 세관의 최종 승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¹²¹⁾.

수출 신고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포장명세서, 수출허가서(필요 시)이며, 수출신고서를 출력하여 수출 항구에서 세관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출세 납부 대상 품목은 수출세를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의 경우, 세관신고인이 통보한 장소에 물품을 집결한 다음 제출하며,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늦어도 4시간 전이다. 꾸리어(국제택배) 서비스로 내보내는 수출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늦어도 2시간 전이다.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수출신고서도 수출 신고일로부터 15일 동안 유효하다.

베트남에서는 자원유출 방지, 국제시장에서의 자원 수요 증대, 국내 시장 안정 등의 목적을 위해 일부 물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합니다. 현재 수출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규조토, 주석, 대리석, 화강암, 원유, 석탄·연탄·조개탄·기타 이와 유사한 고체연료, 임산물, 미가공 구리합금 및 정제동, 메탈스크랩 등으로 주로 1차산품입니다. 수출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수출가격(FOB기준)의 33%가 적용된다. 다만, 최근 일부품목의 경우 수출 관세가 5~15% 인상되어, 각각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¹²²⁾.

1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2015.12.p.57

1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p.125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 『베트남 관세법령 및 FTA활용방법』,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asean/2/Vietnam2.pdf, 검색일자: 2017. 04. 30.

<그림 IV-1> 베트남 수출통관 흐름도

3. 수입 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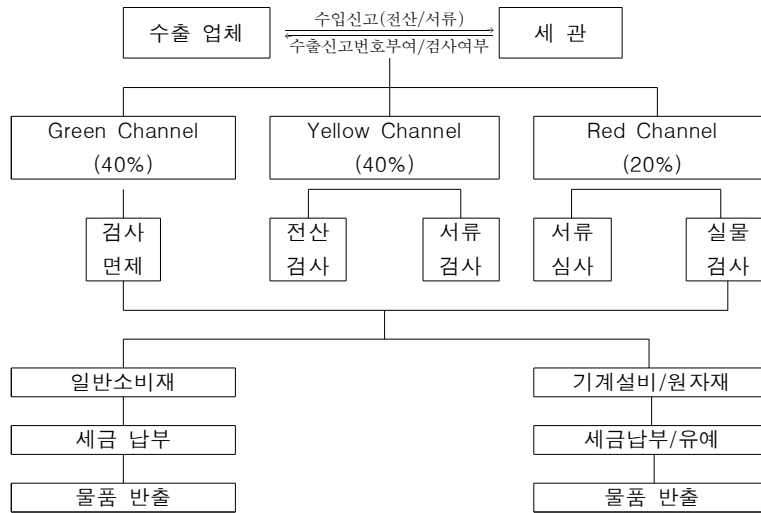
외국에서 베트남 영역에 도착한 모든 수입물품은 통관 대상이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통관 단계에서 부과된다. 수입통관 절차는 베트남 신 관세청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크게 수입신고→세관 서류심사→물품 검사→관세 등 제세 납부→물품 반출 순서로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최장 21일 정도¹²³⁾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국경 관문에 도착하기전 또는 국경 관문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수입신고서는 신고일로부터 15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또한 수입자는 서류와 전산을 통한 수입신고가 모두 가능하며, 물품을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전자통관시스템(E-Custom)의 실행수준은 아직 미미하다는 것이 무역업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며, 베트남 재무부는 전국적으로 전자 통관시스템 구축을 검

123)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토하여 2020년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¹²⁴⁾.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 『베트남 관세법령 및 FTA활용방법』,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asean/2/Vietnam2.pdf, 검색일자: 2017. 04. 30.

<그림 IV-2> 베트남 수입통관 흐름도

1) 수입 신고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화물 허가증(I/L) 또는 각종 증명, 도착 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 운송장 (Airway Bill),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송장, 쿼터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 증명서(Annul Import License),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에는 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나 거의 활성화 돼 있지 아니며, 주로 물류 업체 등을 통해 통관 하거나 업체에 자체 통관 전담 직원을 두어 통관을 진행한다. 현재 수입 신고는 전산과 서류 신고 모두 가능하며, 물품을

1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베트남 통관절차 및 운송」,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수입 신고 후 세관 검사는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 Red Channel(고위험) 3가지 중 한 가지로 구분돼 진행된다.

2)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품목의 경우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돼 검사한다. 한편 강제적 검사/규격/인증을 받아야 수입, 판매되는 경우의 물품은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샘플을 검사한 후 적격 여부가 판정된 이후에야 통관이 허용된다. Green Channel, Yellow Channel, Red Channel 등 3가지로 구분 진행되며,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서류 검사 및 물품 검사를 면제한다(Green Channel).

<표IV-1> 베트남 세관 수입물품검사 종류

Channel 분류		필요 심사 절차
Green Channel		전산 신고만으로 신고 수리 가능 -세관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면제
Yellow Channel	E-Yellow Channel	e-document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Paper-Yellow Channel	종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Red Channel		종이 서류 제출 및 세관의 물품 검사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수입된 재화가 면세 대상인 고정 자산 성격의 기계 장치류 또는 세관의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가 면제된다. 단, 세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 물품(Red Channel)에 대해 세관 서류 검사와 더불어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진행되며 검사 방식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세 종류는 ① 전수 검사 대상, ② 무작위 10% 검사 대상(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 ③ 무작위 5% 검사 대상(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이다.

3) 검사 제도

베트남 관세법 30조에 따르면, 농산물, 수산물 등 특정 품목 또는 장기간 동안 통관 기록이 우수한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검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통관의 경우 10% 샘플 검사를 하고 있다. 만일, 통관 절차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 전수 조사를 해야만 한다¹²⁵⁾.

제 2 절 관세규정과 통관절차상의 문제점

1. 관세규정상의 문제점

1) 베트남 관세법체제의 복잡성

앞에서 살펴본바 대로 한국 관세법과 베트남의 관세법 체계는 상이한 면이 보인다.

첫째, 우리나라 관세법은 관세행정에 있어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관세법시행령과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장의 총칙 아래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세율 및 품목분류, 감면, 환급 등 납세자의 권리를 다룬 후에 운송수단 및 수출입 통칙을 다루고 있고 세칙과 연결되어 일목요연하게 연결되지만, 베트남의 관세관련 법규의 체계는 우선 신관세법에서 제1장 총칙, 제2장 세관의 임무 및 조직 제3장

1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베트남 통관절차 및 운송」,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

통관절차, 검사제도, 세관감시, 제4장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국세 및 기타 각종 수익금 납부 등, 제5장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 제6장 관세정보와 수출입 물품 통계, 제6장 관세에 대한 국가관리, 제7장 상훈 및 위반처리, 제8장 시행 조항 이루어져있다. 그런데 관세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수출·수입세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방대한 양의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세금 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데 이 시행규칙은 총 166개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법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의 순서로 되어 있어 법령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상위법의 규정을 하위법에 상세하게 규정하여 법령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베트남의 관세 관련법규는 신관세법 이외에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규율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으로 관세법을 보완하는 각종 시행규칙과 고시 등을 활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많은 법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당사자나 연구자들도 체계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2) 관세법령 해석상의 상이와 세관직원의 경직성

베트남의 현지 기업인들은 관세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세관과 담당자들이 각각 상이하다고 불평을 한다.

전산 수출입신고를 하고서도 신고서를 다시 프린트하여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든지, 수출화물 소재지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다시 항만세관에 가서 선적확인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수출입업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세관 직원들의 업무처리 행태 또한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예컨대, 수입물품이 긴급히 생산에 사용되어야 할 물품이라고 세관직원들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통관이 더 늦어져 버린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불평을 하고 있으며, 세관직원들의 청렴성에 대하여 많은 한국 투자자들은 세관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은 통관시에 자사가 직접하기 보다는 포워딩업체나 물류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통계확보가 되지 않으며,

남부지역 세관과 북부지역 세관간의 교류도 미흡하여 남부 또는 북부의 잉여화물이 북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직접 이관되지도 않고 업체는 오히려 외국으로 수출하여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체한다고 한다¹²⁶⁾. 이는 세관 직원의 업무태도의 합리적이지 못한 경직성의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관세행정기구상의 문제점

베트남에는 국경감시소·세관출장소는 현재 185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들 세관집행 기구는 성급·지방·시급 세관의 산하기구로서 이들 세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지방관세 조직이 각 직할시 및 성(省)의 소속으로 돼 있어, 관세법령과 중앙정부 재무부, 관세총국의 지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각 건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각 관세국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다.

베트남의 세관은 한국처럼 중앙 통제하에 운용되고 있기는 하나, 세부 시행령에 따른 업무 처리는 한국처럼 일사분란하지 않다. 세관 직원 역시 성 세관별 자율 선발 체계이며, 세관원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관성 저하, 신속한 서비스 및 전문성 개선 애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4) 과세요건 및 결정상의 차이점

한국 관세법상의 관세는 수입관세만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의 과세물건(과세객체, 과세대상)을 수입물품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물품 중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대체로 관세율표상의 무세품과 관세법상의 각종 면세품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관세법 자체내 수입품의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에서 보면 과세대상이 비과세 대상 물품을 제외한 베트남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과 국내시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반입되는 물품 수출세, 수입세 과세대상이다. 한국의 규정은 수입물품에만 과세 대상이나, 베트남에서는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에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126) 한국무역협회 호치민 지부, 베트남에서의 통관 및 무역운송, 2013.6.18 p.2.

한편, 한국 관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은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세환율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하여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 한국 관세법에서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의 규정에 의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을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세, 수입세 과세표준은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 수량, 과세가격, 백분율에 따른 세율이며,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수출, 수입 물품의 실제 수량 및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종량세액이다. 과세방법은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가격 및 과세 시점 세율표에 기재된 품목별 세율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종량세 적용 물품의 경우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 시점에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절대세액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통화는 베트남동화며, 외화납부가 허가된 경우 교환이 자유로운 외화로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의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계약에 따라 수출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며,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국제협약에 부합하고 계약에 따라 최초수입 국경관문에서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다.

또한 베트남의 관세율은 우대세율, 특별우대세율, 일반세율을 기본으로 하여 과잉수입되는 물품, 보조금을 지원받는 물품, 덤핑물품, 베트남 수출물품에 대해 차별대우가 있는 경우 개별적인 안내 법률규범 문건에 따른 상계관세, 반덤핑세, 반차별대우관세, 자위세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베트남의 과세표준, 과세환율, 과세시점은 거의 동일 한데, 다만, 베트남에서는 어느 품목에서 수출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5) 높은 관세장벽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일본·중국·호주 등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MFN평균관세율을 보면 WTO 가입전인 2000년에는 16.2%였으나, WTO가입 후인 2011년도에는 11.1%로 낮아졌다. 그리고 최근 발효된 한국과의 양자간 FTA(2015.12.20)를 비롯하여 미국 등과의 TPP, EU와의 FTA 등이 추가적으로 발효될 경우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인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한국 94.7%(+3%p), 베트남 92.4%(+6.1%p)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한바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등을 3년, 전동기,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은 5년, 철도 차량부품, 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 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화장품 등은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¹²⁷⁾.

6) 납세의무자와 납세

한국의 관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 특별 납세의무자,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된다. 베트남 관세규정에서는 납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과세대상에 속한 수출, 수입 물품이 있는 법인, 개인은 수출세, 수입세 납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관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자진신고를 하여 신고납부서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베트남의 수출·수입 세법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납부 기한은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라고 규정하여 한국보다 15일 정도 더 기간이 길다. 또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은 보증기한이나,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다.

7) 관세감면 및 환급

일정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의무를 무조건 감면하거나, 일정용도에 사용할 것

127)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 2015 외국의 통상환경, 2015. p.13.

을 조건으로 감면하는 제도이다. 납부세액의 일부면제를 감세라 하고, 전부면제를 면세라고 한다.

한국과 베트남의 규정에서 보면 각각 면세, 환급 등의 규정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감세규정은 관세기관의 감시과정에 수출, 수입 물품이 훼손, 분실 되었으며 심사기관, 법인의 감정결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감세가 검토되며, 감세비율은 물품의 실제 손상비율에 상응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자세한 규정은 하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다.

8) 관세형벌 체계의 차이점

한국의 관세관련 법령, 중국의 법령과 국무원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관세형벌 규정은 징역형, 벌금형, 몰수의 관세형벌과 추징, 과태료의 관세행정벌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미수범 등에서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리고 관세법상 어떤 범죄에도 교사범은 성립되는데, 관세법에서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을 방조한 종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게 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예비를 한 자는 1/2 을 경감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의 관련법상의 처벌규정을 보면 벌금형과 가산세 및 조세에 관한 행정위반 조치, 등을 조세에 관한 처리결정에 따른 세액,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물품을 임시 압류하거나 재산을 유치 및 강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관세법에서는 범죄행위 유형별로 그 처벌이 일목요연하게 과태료, 벌금형, 징역형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베트남의 관련 규정에서는 벌금 및 가산세, 행정처분으로 강매조치, 고액 탈세 등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 정도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공무원의 위법 또는 관련 있는 기타 개인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면, 세관공무원 또는 관련 있는 기타 개인이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세액을 점용하거나 탈취한 경우, 점용, 탈취한 세액을 전부 국고에 배상하고, 위법의 성질과 정도를 감안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규율처리, 행정처벌 또는 형사책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2. 통관절차상의 문제점

1) 통관절차 복잡성

베트남에서는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통관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세관에 따라 통관기준이 상이하고, 통관관련규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업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¹²⁸⁾. 또한 공개되지 않은 통관관련 내부규정이 많아 규제를 당할 경우 규정에 적합한 조치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조치인 경우에도 항변이 곤란하다.

(1) 무역 분야 소요기간 및 비용 비교

<표IV-2> 2015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분야 소요기간 및 비용 비교

구 분		한국(3위)		베트남(75위)	
		서울(부산항)		호치민	
		기간(일)	비용(US\$)	기간(일)	비용(US\$)
수출	통관/검사	1	15	4	100
	서류준비	3	55	12	160
	수출국내운송/취급	2	500	2	200
	항만/터미널	2	100	3	150
	합계	8	670	21	610
수입	통관/검사	1	30	4	95
	서류준비	2	65	12	130
	수출국내운송/취급	2	500	1	200
	항만/터미널	2	100	4	175
	합계	7	695	21	600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참조 작성.

128) KOTRA 호치민 무역관 발표자료, 2013. 6. 29.

World Bank에서 매년 발간하는 「Doing Business」 보고서¹²⁹⁾는 부문별로 조사 평가한 내용을 보면,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시(Starting a business), 건설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폐업(Closing a business) 등 9개의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한국은 세계 3위에 해당되며, 베트남은 75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수출에서 전체 8일이 소요되며 그 비용은 670달러이다. 베트남은 수출의 경우 21일, 비용은 610달러이다. 또한 수입의 경우 한국은 7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695달러이며, 베트남은 21일이 소요되고 비용은 600달러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직까지 베트남의 통관관련 소요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의 한국과 베트남의 통관관련 소요시간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IV-3> 한국과 베트남 수출입 소요기간

구 분	2016		2017	
	한국	베트남(99위)	한국	베트남(93위)
수출시간(국경준수,H)	14	57	13	58
수출비용(국경준수,US\$)	185	309	185	309
수출시간(서류준비, H)	1	83	1	50
수출비용(서류준비, US\$)	11	139	114	139
수입시간(국경준수,H)	6	64	6	62
수입비용(국경준수,US\$)	315	268	315	392
수입시간(서류준비, H)	1	106	1	76
수입비용(서류준비, US\$)	27	183	27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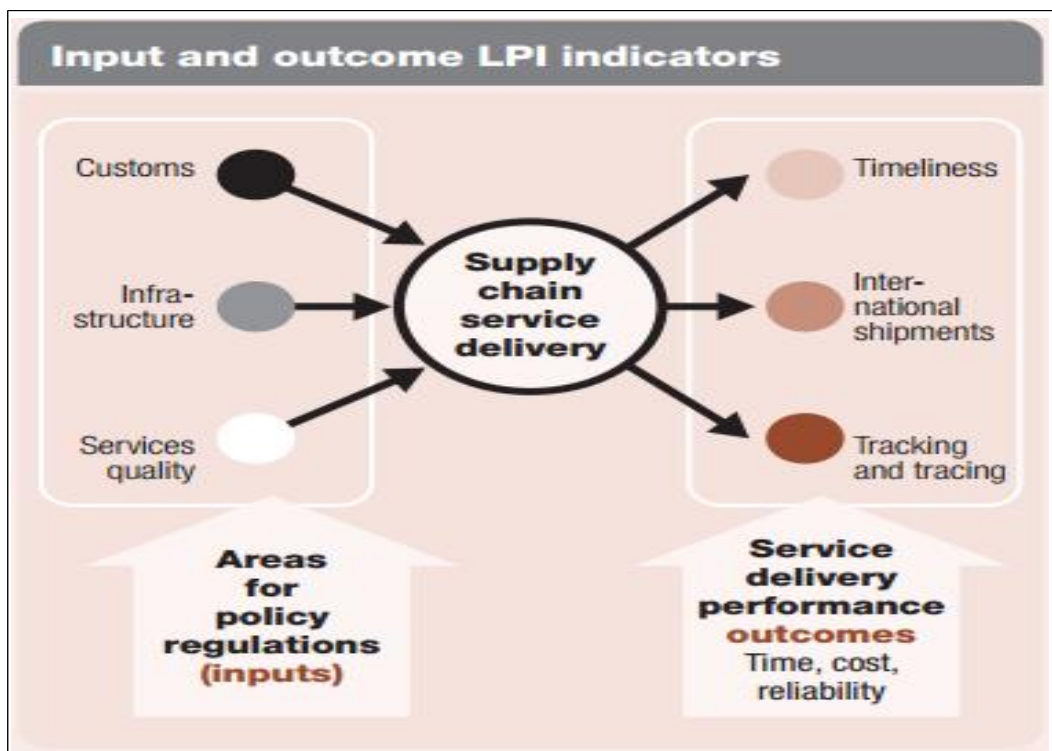
* 수출서류에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출신고필증, 기술표준관련서류 등이며, 수입서류에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화물추적지시서, 수입신고필증, 검사보고서 등임.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6, 2017.

129)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명으로 발표하고 있다.

(2) 물류성과지수

물류는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성과를 측정하고 요약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지만 물류 프로세스 (항만 처리, 통관, 운송 등)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검토하여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구축이 완료 될 지라도 국가의 공급망에서 구조적인 차이로 인하여 정보를 단일의 일관된 국가 간 데이터로 쉽게 집계 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 투명성 및 서비스 품질,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과 같은 우수한 물류의 중요한 요소는 시간 및 비용 정보만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World Bank에서는 국제 LPI는 6 가지 핵심 성과 구성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단일 집계 방법으로 결합하여 물류 부문 성과의 요약 지표를 개발하여 각국의 관련기관에 서베이를 통하여 관련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림 IV-3> 물류성과지수 질문

6 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 ① 관세 및 국경 통관의 효율성("매우 낮음"1 -"매우 높음"5).
- ② 무역 및 운송 인프라의 품질("매우 낮음"1 -"매우 높음"5).
- ③ 경쟁가격으로 선적예약의 용이함("매우 어려움"1 -"매우 쉬움"5).
- ④ 물류 서비스의 역량 및 품질("매우 낮음"1 -"매우 높음"5).
- ⑤ 화물을 추적하고 추적하는 능력("매우 낮음"1 -"매우 높음"5).
- ⑥ 예정시간 내에 화물이 수화인에게 도달하는 빈도("항상 그렇지 않음"1 -"거의 항상 그렇다"5).

<표IV-4> 한국의 물류성과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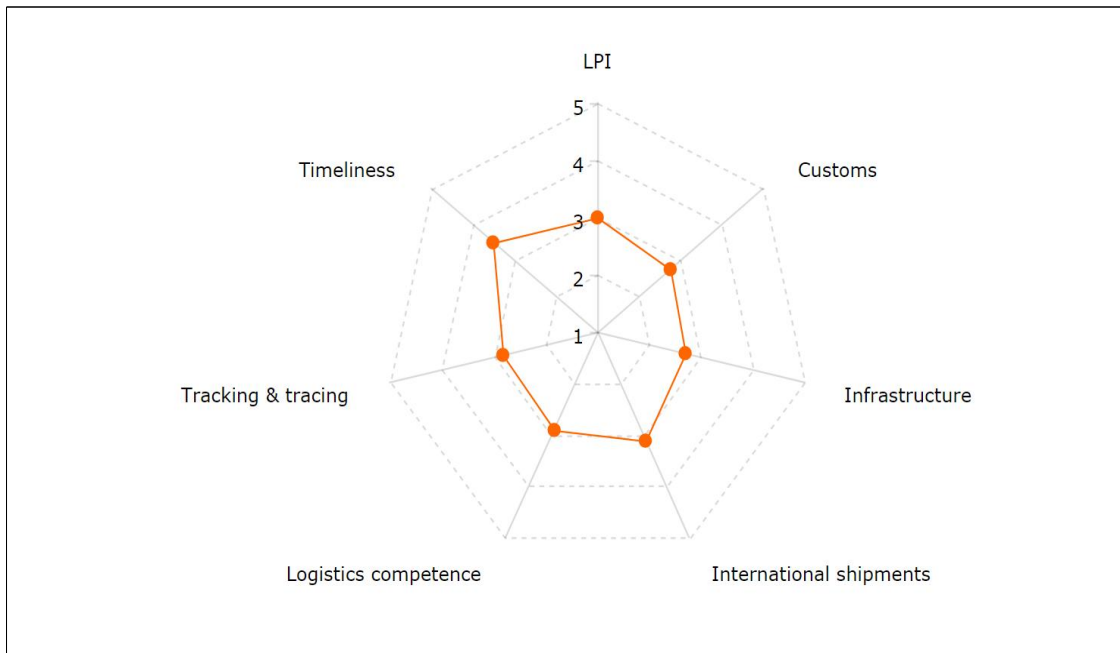
구분	2007	2010	2012	2014	2016
물류성과지수(종합)	3.52	3.64	3.7	3.666	3.717
경쟁가격으로 선적예약의 용이함	3.44	3.47	3.67	3.438	3.583
예정시간내에 화물이 수화인에게 도달하는 빈도	3.86	3.97	4.02	3.996	4.025
무역품질 및 운송관련 인프라(물류 서비스의 역량 및 품질)	3.44	3.62	3.74	3.791	3.791
통관절차의 효율성	3.22	3.33	3.42	3.472	3.453
위탁화물의 추적 및 추적능력	3.56	3.83	3.68	3.689	3.784
수출소요시간	-	1.59	2.0	1.0	2.0
수입소요시간	-	2.0	3.0	1.0	3.0



한국과 베트남의 물류성과지수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한국이 베트남보다 훨씬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표IV-5> 베트남 물류성과 지수

구분	2007	2010	2012	2014	2016
물류성과지수(종합)	2.89	2.96	3.0	3.155	2.977
경쟁가격으로 선적예약의 용이함	3.0	3.04	3.14	3.217	3.123
예정시간내에 화물이 수화인에게 도달하는 빈도	3.22	3.44	3.64	3.49	3.498
무역품질 및 운송관련 인프라(물류 서비스의 역량 및 품질)	2.5	2.56	2.68	3.113	2.695
통관절차의 효율성	2.89	2.68	2.65	2.809	2.751
위탁화물의 추적 및 추적능력	2.9	3.1	3.16	3.192	2.843
수출소요시간	2.8	1.41	2.0	1.0	3.0
수입소요시간	4	1.73	2.0	1.0	3.0



2) 통관 애로 사항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Đ-BTC와 510/QĐ-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며 간소화시켰지만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류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 부과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¹³⁰⁾.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서류 작성에 시간 낭비, 통관에 3-4일 소요가 돼 판매단말기(POS)와 소형 스캐너를 취급하는 'Datalogic Scanning Vietnam'은 매달 200세트의 수출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매월 1만 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뿐 아니라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하기 쉬운 식품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뇌물 요구 압박도 심각하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외투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다. 통관활동은 세관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되는데,

130)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발표자료, 2013. 6. 29.

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1)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함.

(2) 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3)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통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하며, 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하며,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시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정산절차 숙지

통관에서의 정산절차는 한국에 없는 통관절차이나, 베트남에서는 필수절차임에 유의해야 한다. 원료수입, 제조, 수출통관 후 수입신고서 정산은 원료 수입절차 진행한 세관지국에서 실시하며, 경제특구, 보세구역내 생산업체의 정산보고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간내의 수출·수입 물품, 반입·반출·재고 현황에 대해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관세총국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정산보고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타 정산으로는 수출업체에 원자재 공급, 일시 수출입, 임가공 수출입, 국내 보세공장간 거래,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설비·기계·원재료·반제품 수입, 보세구역 내 생산업체, 환급신청, 면세, 관세유예 등의 경우 해당 정산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산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구비서류는 정산대상 업무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다¹³¹⁾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4) 통관절차상의 문제점

(1) 원본 서류제출 요청 및 지연

아직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지 않아 수출입 신고 관련 서류에 대하여 원본 종이서류 요구 등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비용의 발생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수출입 신고 관련 첨부 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인력 필요 및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지역별로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일부의 경우 수출입과 관련이 없는 생산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베트남어로 된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될 수 있는데, 모든 선적 서류를 베트남어로 재작성하는 작업으로 인해 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서류불일치와 품목분류 유의

131) 수출입 유형에 따라, 정산신고 방법이 다르며, 관련서식은 시행규칙 194호 “부록 III, VI” 등에 안내 되어 있다.

FTA 체결 등에 의한 특혜 관세(낮은 세율 또는 무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기재상의 사소한 실수 등으로 인해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세안 국가 간 또는 한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각 협정에서 정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불일치 사항 등이 있다면 이로 인해 특혜 관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¹³²⁾. 지역 세관별로 업무 방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세관별로 관세율과 납부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며, 동일한 HS 코드의 수입 품목에 대하여 세관별 각기 다른 관세율 적용 등 상이한 업무 행정 수속이 행해진 사례가 있다¹³³⁾.

베트남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HS 품목분류 체계로 인한 애로가 있으며, 베트남 HS 코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계류가 많아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으며, HS 품목분류가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비특혜 물품을 주로 ‘기타 품목(others)’으로 분류하게 되어 높은 관세를 부과 받는 일이 있다. 특히 베트남으로 기계류를 수입함에 있어 우리나라 HS 코드에 비해 베트남 HS 코드에 기계류가 자세히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HS 분류에 애로가 있다.

(3) 통관대행과 전자통관의 비활성화

베트남에는 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 또는 Customs Agent 제도가 존재하나 활성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관 업무에 있어 전문성과 신속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이는 화주가 직접 또는 물류 업체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화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원거리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132) 한국에서 발급받은 C/O의 기재내용과 서명권자 확인을 문제삼아 C/O 불인정한 사례로서 해결과정은 우리 수출기업이 전자제품을 베트남 업체로 수출하면서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추진하였으며, 베트남세관은 C/O의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불인정함. 증명서 상단에 기재된 ‘ISSUED RETROACTIVELY’ 문구가 하단과 중복 기재, 정상적인 서명권자가 서명하였는지 확인 필요하고, CTH 기준의 경우 올해부터 FOB 금액을 적지 않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수출자는 이건을 서울세관에 ‘FTA 활용 애로 신고’하였으며, 서울세관의 보고를 받은 관세청에서 베트남세관에 C/O불인정 사유에 대한 해명 서한 발송하였다. 이에 베트남 세관에서 동 C/O 인정, 특혜관세 혜택을 나중에 부여한 사례임. 추후 수출자들의 유의사항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C/O)상 제반 항목 규정 준수 여부 확인하고 현지 관세관 또는 한국 관할 세관으로 ‘FTA 활용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133)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이지만, HS 품목표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문화적 관점이나 견해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HS 코드를 다르게 판정될 수도 있음.

한편, 베트남의 전자통관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통관진행 상황의 파악이 힘든 경우가 있으며, 세관 방문과 그로 인한 금전·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전산화 시스템은 전산 신고 후 추가로 서류 제출도 필요로 하며, 전산 사용자가 많을 경우 세관의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접속이 안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며, 전산 신고 후 정정이 불가능하여 신고를 취소한 후 신규로 다시 신청하는 데에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금 납부 사실에 대해서도 실시간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 하고도 물품 반출이 어려운 일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우호적 관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경제 무역 협력도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베트남은 이미 한국의 제1위 아세안 교역 대상국으로, 한국 역시 베트남의 3대 무역 및 투자 파트너이다. 이처럼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관계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러나 양적으로 증가한 베트남무역은 상이한 법적, 제도적, 절차적 규제와 이에 따른 복잡한 통관절차 환경이 국제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통관절차에 따른 무역장벽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시간적·금전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세규정 대한 비교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한국의 법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의 순서로 되어 있어 법령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상위법의 규정을 하위법에 상세하게 규정하여 법령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베트남의 관세 관련법규는 신관세법 이외에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규율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으로 관세법을 보완하는 각종 시행규칙과 고시 등을 활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많은 법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당사자나 연구자들도 체계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둘째, 관세법령 해석상의 상이와 세관직원의 경직성과 관세행정기구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베트남의 현지 기업인들은 관세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세관과 담당자들이 각각 상이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으며, 전산 수출입신고를 하고서도 신고서를 다시 프린트하여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든지, 수출화물 소재지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다시 항만세관에 가서 선적확인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각 건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각 관세국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베트남의 세관은 한국처럼 중앙 통제하에 운용되고 있기는 하나, 세부 시행령에 따른 업무 처리는 일사분란하지 않다. 세관원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관성 저하, 신속한 서비스 및 전문성 개선 애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셋째, 관세감면 및 환급의 내용을 보면, 한국과 베트남의 규정에서 보면 각각 면세, 환급 등의 규정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감세규정은 관세기관의 감시과정에 수출, 수입 물품이 훼손, 분실 되었으며 심사기관, 법인의 감정결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감세가 검토되며, 감세비율은 물품의 실제 손상비율에 상응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자세한 규정은 하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다.

넷째, 한국의 관세법에서는 범죄행위 유형별로 그 처벌이 일목요연하게 과태료, 벌금형, 징역형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베트남의 관련 규정에서는 벌금 및 가산세, 행정처분으로 강매조치, 고액 탈세 등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 정도로 기술하고 있다.

다섯째, 베트남에서는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통관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세관에 따라 통관기준이 상이하고, 통관관련규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공개되지 않은 통관관련 내부규정이 많아 규제를 당할 경우 규정에 적합한 조치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여섯째, 전자통관시스템 미비점에 대해 보면,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지역별로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일부의 경우 수출입과 관련이 없는 생산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베트남어로 된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될 수 있는데, 모든 선적 서류를 베트남어로 재작성하는 작업으로 인해 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본이 요구되는 서류는 어떤 것인지, 또한 통관 예정 세관에서 주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며, 서류로 인해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서류 구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협력시스템 부재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덟째,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통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하며, 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하며,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이며, 이는 통관 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고 평판이 좋은 통관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화물의 실제 사항과 선적 서류 등 구비 서류 상호 간 차이점 없이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아홉째, 통관에서의 정산절차는 한국에 없는 통관절차이나, 베트남에서는 필수절차임에 유의해야 하며, 원료수입, 제조, 수출통관 후 수입신고서 정산은 원료 수입 절차 진행한 세관지국에서 실시하며, 경제특구, 보세구역내 생산업체의 정산보고는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기간내의 수출·수입 물품, 반입·반출·재고 현황에 대해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수출시 현지의 전문가 및 유경험자들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으며, 통관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모든 관련 서류들과 실제 물품이 정확

히 일치하도록 철저를 기하여 논쟁의 요소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지에서 통관 진행을 계획할 경우에는, 수입 절차 뿐 아니라 수입 신고 수리 이후에 적용될 기타 국내 각종 제도와 절차에 대하여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시간적·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납품기일이 정해져 있는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더욱 큰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세관련 규정과 통관절차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의 내용적인 면에서 비교 분석하였으나, 너무 많은 양의 관련 조항과 베트남의 획일화 되지 않은 법률의 편제로 인하여 연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자가 찾지 못한 베트남의 세세한 관세관련법(법률)이 있을 것도 같으며, 이는 차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자료를 획득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위에서 밝힌 시사점이 한국의 베트남 진출기업 또는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영문,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한·베트남 통상협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2권 제2호, 2017. 4.

노승혁, “한·베트남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효율적 투자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6호, 2004.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노이 무역관, 「2017 베트남 진출전략」, 2016.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3년 주요 투자 유망국(중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투자환경비교」 자료 13-04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떠오르는 신흥공업국, 베트남」 Global Market Report 13-069, 2013.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 국가정보(관세제도)」 웹사이트 참고.

라공우, “중국의 의료기기 수입통관·안전관리규정과 통관애로에 따른 한국기업의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6권 1호, 2015. 2. 28.

라공우, 「관세법」, 도서출판 탐복스, 2011.

라공우·강진욱·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 2. 28.

라공우·강진욱·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 2. 28.

라공우·송진구, “한국과 중국의 관세담보 조항 비교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4호, 2016. 12. 28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2016 외국의 통상환경」(아시아·대양주), 2016.12.

이제홍,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에서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무역학회지, 37(4), 139-160., 2012.

이제홍,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리스크 결정요인이 경쟁력에 미치는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2. 8.

임규채, “한국과 중국의 對베트남 경쟁력 비교”, 무역학회지, 40(1), 298-318., 201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2012. 12.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국가정보(관세제도)」
한국무역협회,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에서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무역학회지
37(4), 2012.8, 139-160 (22 pages), Korea trade review 37(4), 2012. 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웹사이트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한국 법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58호,
2014. 5. 20.)
대한민국 관세법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8호, 2016. 12. 30]
대한민국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외국문헌 및 법률>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 6. 23, 2015년 1월 1일 발효).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제45/2005/QH11호, 2005. 6. 14).
베트남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및 세금관
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제194/2010/TT-BTC호, 2010. 12. 6).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6. 2017 각년 호.
Indicators: The Potential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Trade",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44, OECD Publishing

<웹사이트>

관세점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청 <http://english.customs.go.kr/kcshome/main/index.do>

국제무역협회 <https://www.export.gov>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ww.mos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www.kipf.re.kr>

베트남 통계청 <http://www.gso.gov.vn>

광양세관 <http://english.customs.go.kr>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s on Customs and Customs Procedures between Korea and Vietnam

Hyun-Jin Ja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Korea and Vietnam 's customs regulations were analyzed and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obtained.

First, Korean laws and ordinances are ordered in the order of the Customs Act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Customs Act enforcement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Act, so the laws and regulations are linked together. By doing so, the provisions of the upper law are specified in detail in the lower law, so that the problem can be solved as a statute.

Howeve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Vietnam are regulated by a separate law other than the new customs law, and there are many laws and ordinances by using various regulations and notices supplementing the customs law with separate laws.

Therefore, relevant parties and researchers can not know unless they conduct systematic research.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of customs legislation, problems with the rigidity of customs officers and the customs administration.

Local businessmen in Vietnam complain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customs legislation is different for each customs officer and the person in charge.

There is a problem of export declaration from the exported cargo area and returning to the port customs to confirm the shipment.

In addition, the specific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each case is often different for each customs country, and the customs of Vietnam are operated under the centralized control like Korea, but the processing according to the Detailed Enforcement Decree is not done.

As the authority of the customs officer is too large,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in the handling of the work and the difficulty of rapid service and professional improvement are pointed out.

Third, customs clearance delays due to the complexity and opacity of customs procedures are frequently occurring in Vietnam. If customs clearance standards are different according to local customs and customs regulations are change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y are changed without prior notice. There are many internal regulations related to customs clearance that can not be confirmed if the regulations are applied.

Fourth, in Vietnam,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2013, but no large investment has been made to operate the system smoothly until now. As a result, data transmission and network systems are still not smooth, which is causing frequent clearance delays. In addition, in case of import / export declaration, customs documents are different in each region, and in some cases, production related data not related to import / export are requested.

In some cases, you may be asked to submit documents in Vietnamese, which may lead to time delays due to the rewriting of all shipping documents into Vietnamese. Therefore, it is good to know what kind of documents are required

for the original documents, and also to prepare the kinds of documents required mainly by customs clearance customs beforehand, and thoroughly prepare the documents so that the documents will not be delayed.

Fifth, the seriousness of the pressure of bribe demands from customs officials is undeniable reality. As a way of solving such customs problems, many companies are entrusting customs procedures to skilled local logistics companies and are actively seeking outsourcing centering on companies that have difficulties in customs clearance.

If you want to use customs brokerage, it is a good idea to sign a contract with an experienced, professional and reputable customs broker. In addition, all the documents must be written accurately, without any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documents of the cargo and the documents of shipment.

In the course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ntents of customs regulations and customs procedures in Korea and Vietnam. However,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in conducting the research due to the excessive amount of related provisions and the arrangement of unequal Vietnamese law. There is also a detailed tariff law in Vietnam that we have not been able to find.

I hope that further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by acquiring more data from further studies and that the implications mentioned above will be of benefit to Korean companies or exporters in Vietnam.